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김명아



비교법제 연구 12-20-①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김 명 아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Investment Issues in China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Kim, Myoung-Ah

2012. 6. 7.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국의 경제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라고 불릴 만큼 급속하게 경제력이 발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과 관련 법제가 급변하고 있음
-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외자 우대 조세제도 폐지, 투자 선별화 정책,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지역별 격차 해소, 자원 재배분, 3高(고에너지소모 · 고오염 · 고자원소모) 산업의 억제, 녹색성장 정책, 첨단화 지향 등의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중국의 경제 관련 법제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제도 계속 달라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나 투자 규모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투자 관련 법제에 대하여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중국의 최신 투자법제를 담고 있지 못하거나, 최근 연구성과들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가 각 법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최신 법제를 정부의 정책과 함께 총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중국 투자법제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문에서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제의 제·개정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바뀌고 있는 관련 대외 경제 법제를 우리나라 투자자의 시각에서 비교법적으로 분석·연구하기로 함

II. 주요 내용

- 중국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투자법제 관련 기본 정책을 먼저 파악하여야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2011년부터 중국은 「12.5 계획(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规划綱要))」이 시작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경제 발전의 성과가 중국 내 전지역·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하려 함
 - 중국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과 12.5 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2011년 말 대폭 개정하여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2011年修訂))」을 마련. 동 목록에는 외국인투자 장려 종목과 제한 종목, 금지 종목이 제시되어 있어 중국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중국 중서부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자는 2008년 12월 23일 국무원·상무부 제18호령으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10년 4월 국무원은 국무원령 제9호로서 「국무원의 외자이용 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을 제정하여 외자의 이용 구조,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 외자이용방식, 외국인투자 관리체계, 투자환경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는 동 문건의 내용에 따라 변화하게 됨
- 중국 정부는 근래 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으며,内外국인 세제차별제도를 철폐하고 첨단산업위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과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實施條例)」를 중심으로 직접투자 관련 조세 정책과 내용 파악할 수 있음
- 중국의 외국 기업 설립 규제에 관한 법제도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차츰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6월 개정(2006제정)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關於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規定)」에서

는 주요 산업과, 유명 상표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함

-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중국 기업 M&A에 대한 안전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 2월 국무원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國務院辦公廳關於建立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安全審查制度的通知)」와 2011년 8월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의 실시에 관한 규정(商務部實施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安全審查制度的規定)」의 내용에 따라 안전심사제도가 실시됨
 - 2010년 3월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역내 조합기업 설립 관리방법(外國企業或者個人在中國境內設立合伙企業管理辦法)」이 시행되어 외국투자자는 기존의 3자(합자, 합작, 독자) 기업 형태 외에도 중국 내에 조합기업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짐.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함께 조합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 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고 지방 상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중국은 2008년의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内外국인 세제차별제도를 철폐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에 대한 세재개혁안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위안화 결제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자본이동에 따른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의 2011년 10월 12일 「해외 위안화의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跨竟人民幣直接投資有關問題的通知)」에서는 해외투자자가 국제무역 또는 사전 투자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에 대하여 합법성을 부여하고, 다만 직접투자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의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外商直接投資人民幣結算業務管理辦法)」이 2011년 10월 13일 공고됨에 따라 해외투자자는 위안화 결제계좌를 통하여 직접투자하거나 위안화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2010년 9월의 중국인민은행의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境外机构人民幣銀行結算賬戶管理辦法)」에 따라 위안화결제계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됨
-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과의 M&A를 통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근거법률이 되는 한편 기업결합에 관한 기본 규정들을 두어 국무원에 반독점법 시행지침의 제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국무원은 2008년 8월 3일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國務院關於經營者集中申報標準的規定)」을 제정하여,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반독점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결합의 기준을 정함

- 상무부의 「기업결합 신고 방법(經營者集中申報辦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형태와 신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2010년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심사방법(經營者集中審查辦法)에서 는 기업결합에 대한 반독점심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당사자 의견진술권이나 관계자 의견수렴절차, 공청회의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 반독점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기업결합의 허가 또는 금지의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함
- 외자기업에게만 부여되었던 우대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 국내기업에 비해 단순 제조업에서는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또한, 기업소득세의 우대혜택을 누리는 첨단기업이나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해당 업종에 우대혜택의 전제조건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우대혜택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리스크와 기업 이윤 발생 시의 이익회수 문제, 기업 철수 시의 법적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함

III. 기대효과

-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 법 제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투자자가 중국에 진출하

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 관련 법제를 제시하고 분석함
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투자법적 이해의 틀
을 마련하고자 함

▶ 주제어 : 외국인투자, 12.5계획,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국무원 제9호 문건, 국가안전심
사제도, 기업결합신고, 조세, 외자이용의 다양화,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Due to China's recent expansion of economies of scale, the proportion of its domestic market is growing and the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y has changed significantly. China is rapidly developing as global economic power enough to be called G2 after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re rapidly changing.
- China's foreign investment policy is closely connected as following government policies: the abolishing of a low-lax policy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differentiated industrial policy, reinforcement of labor-related regulations, reinforcement of antitrust and M&A regulations, Bridging the regional gap, Resource reallocation, Suppression of the industries (over-consumption of energy, resource, and industrial polluters), Green Growth policies, Backup of high-tech industries.
- China's economy-related legislations are constantly evolving, so that legislation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re also changing. Given Korea's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scale of investment, continued interest and research on China's investment-related legislation are needed.

- Existing domestic studies of China's laws do not cover the latest investment laws, even though they are updating ones, they have a limitation in that each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sporadically.
-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legislation on Chinese foreign investment to domestic investors systematically by analysing the latest legislation with government policy.
-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including revision of legislation on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mparativ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foreign economic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investors.

II. Main Contents

- It is necessary to study China's economic policy changes and investment-related legislation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change of Foreign Investment Law accurately.
- The Chinese government is recently trying to attract actively foreign capital in the field of value-added industries, high-tech industries, eco-friendly industry, and give tax-benefit mainly to high-tech industries, eliminate differentiated tax system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

- It should be noted that China's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companies have been changing and gradually strengthening, while seeking to change the direction toward corporate diversification.
- The Chinese government is increasing tax credits for newly growing industry through the amendment of "Corporate Income Tax," in 2008, with elimination of differentiated tax system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 addition, VAT and business tax reform proposals are expanding.
- To accelerat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the Chinese government strives to reduce financial risks according to the cross-border movement of capital, facilitating for foreign investors to invest by the currency of renminbi.
- Anti-monopoly Law refers to several provisions on the investment to the Chinese companies by foreign investors through M&A. The law serves as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screening system and delegate comprehensively enactment of guidelines on Anti-monopoly Law to the State Council by stipulating a couple of basic provisions in the Undertaking Concentration(Merger).
- Korean firms need to establish aggressive countermeasures to advance into China's domestic market,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Preferential policies granted to foreign-funded enterprises

have been abolished, in the aftermath of that, Korean firms have already lost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the Chinese domestic companies. In addition, Korean firms such as high-tech companies enjoying preferential benefit of corporate income tax should review thoroughly a prerequisite for preferential benefits and at the same time, the risk when they do not meet a prerequisite for preferential benefit.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on foreign investment necessary to advance into chinese domestic market by presenting and analysing related legislations based on the Chinese government's basic policy on foreign investment.

➤ Key Words : Foreign Investment Policy, 12.5 Planning(the Outline of the 12th Five-Year Plan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Catalogue of Industries for Guiding Foreign Investment, Catalogue of Priority Industries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Central-Western Region, Several Opinions of the State Council on Further Doing a Good Job in the Uti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new Security Review Regime for Foreign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Measures for the Undertaking Concentration Examination, Tax system, Diversification of the Uti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the expansion for Chinese domestic market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11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I. 연구의 범위	20
II. 연구의 방법	22
제 2 장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23
제 1 절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	23
I.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성립	23
II.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주요 내용	26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32
제 2 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4
I.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34
II.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39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42
제 3 절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4

I.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44
II. 중서부지역 투자의 장려	46
III.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	48
IV.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개혁	50
V. 투자환경의 조성	52
V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53
 제 3 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55
제 1 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특징	55
I. 구조와 형태	55
II. 인허가 시스템	56
III. 외환거래 규제	57
제 2 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변화 방향	58
I. 허가 권한 이전	58
II. 규제 강화	59
III. 기업 형태의 다양화	61
IV. 지방 법규의 정비	64
V. 새로운 영역의 규제	69
제 3 절 외자기업 관련 법규	70
I.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조합기업 설립 관리방법	70
II.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 · 합병에 관한 규정	72
III.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 · 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	73
제 4 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	79

I. 중국 기업결합신고 제도	79
II. 국가안전심사제도	80
III. 법원과 행정부문간 관계	80
제 4 장 중국의 직접투자 관련 조세 법제와 외환관리법제에 대한 분석	81
제 1 절 조세법제와 그 변화	81
I.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81
II. 부가가치세 임시조례와 그 실시세칙	82
III. 영업세	84
IV.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85
제 2 절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86
I. 외환관리조례	86
II. 해외 위안화의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86
III.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	87
IV.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	88
V. 외환업무관리 강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89
V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89
제 5 장 중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	91
제 1 절 반독점법과 관련 규정	91
제 2 절 기업결합 사전신고	92
I. 기업결합 사전신고 이전의 협의	92
II. 기업결합 사전 신고	93
III. 신고기준으로서의 영업액	95
IV. 사전신고 면제	97

V. 사전신고 절차	97
제 3 절 기업결합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99
I. 기초심사 절차	99
II. 실질심사 절차	100
III. 심사기준	103
제 4 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108
제 6 장 결 론	111
참 고 문 헌	1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중국의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라고 불릴 만큼 급속하게 경제력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과 관련 법제도 빠르게 제·개정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투자형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이 외자유치 확대에서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혜택을 누리던 외자기업의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친기업 중심에서 친서민 중심으로, 비용절감형 투자에서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제는 외자 우대 조세제도 폐지, 투자 선별화 정책,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반독점 및 인수·합병(M&A) 규제 강화, 지역별 격차 해소, 자원 재배분, 3高(고에너지소모·고오염·고자원소모) 산업의 억제, 녹색 성장 정책, 첨단화 지향 등의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변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는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다른 법률 영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실무적인 기대와 함께 한·중 FTA 협상 중인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기대도 가지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최신 법제를 정부의 정책과 함께 총괄적으로 분석·연구하여 중국 투자법제를 국내 투자

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문의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법제적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체제의 흐름을 법적 분석 시각을 통하여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범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 정부의 급변하는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나 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볼 때, 중국의 투자 관련 법제에 대하여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중국의 최신 외국인투자법제를 담고 있지 못하거나, 최근 연구 성과들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가 각 법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최신 투자 관련 법제의 변화 내용을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이를 통하여 대 중국 투자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중국 외국인투자법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법률과 하위법규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그 제정권이 있는 기관에 따라 법률과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정,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로 나뉘어진다. 법률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입법권이 있는 법률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기본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이 있으며,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 국무원 소속의 각 부처 및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부문규장, 성·자치구·직할시 등의 인민정부에서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가 행정입법에 속한다. 또한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비준하는 지방성 법규와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의 인민 대표대회에서 제정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있다.¹⁾ 또한 전국인민 대표대회 등에서는 정책성문건(政策性文件)을 채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책성문건은 법률과 하위법규의 제·개정 방향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인 법규형태의 관련 법제 외에도 정책성문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규정 분석만으로는 중국의 복잡다단한 법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투자 시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법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제의 제·개정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바뀌고 있는 관련 대외 경제 법제가 외국인투자자 즉,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서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실정법규들의 제·개정 방향성 제시 역할을 하는 외국인투자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국 기업 설립 법제의 특징과 변화 방향, 외자기업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조세법제와 외환 관리법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에 직접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법적 토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법제에 관한 분석을 반독점법과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결론으로 연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1)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서 각각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 법제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의 투자자는 외국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II. 연구의 방법

이 보고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인터넷자료검색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고 사례 위주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학계·실무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연구결과와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2000년대 이후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외자정책과 최근 외자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관련 법제의 변화내용을 분석하고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워크숍 개최 내용>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발표주제	발표자
중국 경제발전전환시기의 외국인투자법제 - 12.5시기 상해시 외자유치정책분석	김성화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 교수)
중국의 투자법제 관련 정책 변화와 외환관리	구기보 (승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중국의 외자기업 설립 법제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법제	윤상윤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제 2 장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 정부의 급변하는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²⁾ 아래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제 · 개정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서 법규의 성격을 가지는 정책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바뀌고 있는 관련 대외 경제 법제를 우리나라 투자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제 1 절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

I.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성립

1.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과의 관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11.5 계획(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이하, 11.5 계획이라 함)」³⁾에서는 국제적인 지위 상승, 대외무역 구조의 고도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외자기업의 역할을 조립 · 가공 · 제조업 위주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첨단기술산업과 연구개발산업, 서비스업, 최

2) 张昀 · 李胜兰, ‘法律制度对外商直接投资影响的研究’, 『南方经济』 2011年 第7期, 2011, 19면.

3) 1953년에서 1957년까지 제1차 5개년계획이,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제2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으며, 제3차 5개년계획부터는 1966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어 왔다. 현재에는 2011년부터 제12차 5개년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가차원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http://baike.baidu.com/view/29796.html>).

첨단 제조업, 기간시설과 생태환경 보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러한 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유치가 장려되었다.⁴⁾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질적 성장을 위해 1)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국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 2)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졌던 세제우대 등의 특혜를 축소하고 공평한 외국인투자환경은 조성을 위한 노동 및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3)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고 민간 산업에서의 인수·합병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⁵⁾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2.5 계획(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이하, 12.5 계획이라 함)」에 따라 경제정책이 실시된다. 즉, 경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경제 발전의 성과가 중국 내 전지역·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하고자 한다.

「12.5 계획」의 내용은 「11.5 계획」과 유사하나, 포용적 성장의 기조 아래 민간소득 향상과 7대 신흥전략산업(七大战略性新兴产业) 육성⁶⁾이 핵심이 된다.

「12.5 계획」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조에 따라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가며, 발전 방식을 전환해 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⁷⁾ 즉, 도시

4) 王镭(责任编辑), ‘受权发布：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全文）’, 新华网, 2006年03月16日(http://news.xinhuanet.com/misc/2006-03/16/content_4309517_17.htm)

5) 김관호, ‘중국의 「인수·합병형 외국인 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고찰’, 『통상법률』, 법무부, 2012-4, 51면.

6) 7대 신흥전략산업에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http://feature.mei.gov.cn/industry/news/20101026/33047320101026161520_1.htm).

7) ‘中国共产党第十七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新华社, 2010年10月18日. http://www.gov.cn/ldhd/2010-10/18/content_1723271.htm (방문일자: 2012-06-13)

와 농촌 주민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갖추며, 취업을 촉진하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며,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의료보건업 개혁과 사회관리 혁신 내지 국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발전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내수확대를 통하여 소비와 투자, 수출의 조화를 이루고, 신흥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원절약형 ·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화와 지역화에 동참하고, 대외 무역구조를 최적화하도록 한다.

2. 중국 국민경제 ·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논의 배경

중국의 「12.5 계획」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인 요소로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을 통해 금융위기 이전 까지 연평균 10.4%의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해마다 증대 되는 등의 소득 불균형이 확대 되고, 자본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소비의 기여도는 급감함에 따라 중국경제의 지속한 발전 가능성은 우려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⁸⁾ 또한 근로소득의 하락과 사회보장 및 기본공공서비스 등에 대

8)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2000년 2배에서 2009년 3배로 확대되었다. 최명해 외, 「중국 '12.5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314호, 2010.10.26, 4면 참고.

한 정부의 재정 지출의 부족으로 사회불안 요소가 증대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⁹⁾

대외적인 요소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중국의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주요 수출 의존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가 내수 부진의 탈출 수단으로 수출 확대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의 수출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들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수 시장에 의존한 성장방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강조되었다.¹⁰⁾

II.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주요 내용

1. 과학적 발전과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과학적 발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은 시대의 요구이며 중국의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의 초석이다.¹¹⁾ 12.5 시기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중산층 사회)를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개혁개방 심화와 경제발전방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과학기술 진보와

9)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노동소득분배율)은 1993년-2007년 사이에 49.49%에서 38.74%로 급감했고, 2008년 사회보장 및 기본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은 15.3%에 불과했다. 이는 1인당 평균 GDP 2,000-6,000달러 수준 국가의 사회보장 및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이 31.4%인 것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최명해 외, 위의 논문, 5-6면.

10) 曹滔, ‘我国外贸企业开展内销的制约因素与策略’, 『中国外贸』第244期, 2011年 7月, 58~60页.

11) KIEP 북경사무소,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강요(초안)’,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KIEP, 2011.05.09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임.

혁신을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견지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새롭고 현저한 진보를 가져오도록 하고, 경제발전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과학교육 부흥국가(興國)전략과 인재강국 전략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이라는 제1생산력과 인재라는 제1자원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교육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하고 자주혁신 능력을 증강시킨다. 이를 통해 혁신적 인재를 확충하여 과학기술 진보와 노동자 자질 제고, 관리혁신 전환에 따른 발전을 추진하고 혁신적 국가를 건설한다.

2.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공업으로 농업 촉진 및 도시로 농촌을 견인하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원(强农惠农)을 강화하고, 농업의 현대화 수준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농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개척해야 한다. 첫째, 현대 농업 발전 가속화를 위해 국가 식량안전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농업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종합생산력, 위험 대응능력,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의 증가를 촉진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 일체화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계획을 착실히 완성하며, 농촌의 인프라시설 건설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촌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인 발전 요구에 따라 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본 경영제도 및 정책, 관련 법률법규를 구축하고, 농촌 발전 메커니즘 개혁의 빠른 추진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활성화 시킨다.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타지역간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개발 질서를

규범화하고 개발강도를 조절하며 고효율, 상호협력,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지역 간 협조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상호작용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 격차를 점차 축소시키고, 도시화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3. 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의 대대적 발전 추진

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특유의 신형공업화 길을 고수하고 시장수요 변화에 적응하며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산업의 비교우위를 선점하여 구조의 최적화를 실현 시킨다. 기업의 기술개혁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능력을 제고하고, 기업 인수·합병 등 시장화 방식을 지원하여 기업주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또한 핵심 기술발전과 발전수요를 기초로 하여 신흥과학 기술과 신흥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생물, 최고급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의 신흥전략산업을 육성 및 발전 시킨다. 다양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 발전을 통한 환경보호 및 국제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청정한 현대 에너지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 산업의 적극적 발전을 위하여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고도화 전략을 중점으로 한다. 서비스 산업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체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확장한다. 또한,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분야를 양성하며, 서비스 산업의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크화 경영을 추진하여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

4. 자원절약형과 환경 친화형 사회 건설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자원 환경의 제약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고¹²⁾ 녹색, 저탄소 발전이념을 수립 한다.¹³⁾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를 중점으로 하는 장려와 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자원이용 통제를 통한 자원절약과 공급과 수요의 쌍방향 조절, 차별화 관리의 전면적 실행을 통한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각종 자원보존제도를 고도화 한다. 이를 위해 생산, 유통, 소비 각 부분의 순환경제 발전을 추진하여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순환이 용체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생산방식과 소비모델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하며 생태문명 수준을 향상시킨다.

5. 기본 공공서비스시스템 구축과 사회공공관리 혁신

민생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직책이행 및 보장능력을 향상시킨다. 취업촉진을 사회경제발전의 우선 목표로 하고, 소득분배, 사회보장, 의료 및 보건, 주택 등의 보장과 제도적 안배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발전성과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또한, 경제체제의 심각한 변혁, 사회구조의 심각한 변동, 이익구조의 심각한 조정, 사상관념의 심각한 변화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여 사회관리 체제구조를 창조하고 사회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완전한 중국 특

12) 林立国, ‘追问康菲漏油事件:外商直接投资加剧环境污染’,『今日关注』, 2011年 9月, 38~40页; 周明月, ‘外商直接投资对环境规制的影响研究’,『无锡商业职业技术学院学报』, 第11卷 第5期, 2011.10, 5~7页.

13) 程思婧, 国登丰, ‘FDI与中国碳排放关系的实证研究’,『经营管理者』, 2011年 01期, 60~61页.

색의 사회주의 사회관리 체제를 설립하고, 활력이 충만하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확보한다.

6. 문화 발전과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 추진

전 민족의 문명수준을 효율적이고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현대화를 위한 사회주의 사상 보장과 정신적 원동력 및 지적 지원을 강화한다. 민중 문화 수요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여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화를 보다 확대하여 정신문화 상품 및 사회문화 생활을 더욱 다채롭게 한다. 한편으로는 공익성 문화 사업을,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성 문화 사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효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 및 사회 효율의 유기적인 조화를 실현한다.

정치 문명 거설 추진을 위해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발적 개선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에 근거한 국가 통치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과학입법과 민주입법을 견지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정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7.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과 대외개방 수준 향상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한다. 경제 영역의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의 상층 설계 및 전체적이 계획을 더욱 중시하는 등 개혁의 우선순위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한다. 경제체제 및 정치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및 사회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심화하고 민중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각 방면의 적극성을 한층 더 고양한다.¹⁴⁾

14) 邹学慧, ‘基于FDI 的本土经济发展研究’, 『哈尔滨商业大学学报(自然科学版)』, 第2卷第3期, 2011.6, 365~368页.

폭 넓은 개방과 협조적 구역발전의 결합을 지속화하고 연해와 내륙, 국경 개방을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보완하고 업무를 분담, 협력하여 균형적이고 협조적인 구역개발구조를 형성한다. 지속적인 안정 및 외수확대와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수량증가 위주에서 질량 제고 위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우세에서 종합적 경쟁 우세로 전환하여 대외무역을 촉진시킨다. 한편 외자와 대외투자 이용효율 증대로 지역 시장의 안정화와 자원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세계경제와의 협력 수준을 향상 시킨다.

[표 1] 12.5 계획의 주요 내용¹⁵⁾

핵심 기조	포용적 성장	
정책 방향	민생보장 및 개선 추구	발전방식의 전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농촌의 수입 증가 ▪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시스템 완비 ▪ 취업촉진 및 조화로운 근로관계 ▪ 소득분배 관계 조정 ▪ 국민소득 조정 ▪ 사회보장체계 완비 ▪ 농업 현대화 추진 ▪ 의료보건분야의 개혁 ▪ 사회공공관리 혁신 ▪ 국민 간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확대전략 견지 ▪ 소비-투자-수출의 조화 ▪ 신흥전략산업육성, 서비스업 발전 도모 ▪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 대외 무역구조의 최적화 ▪ 글로벌 거버넌스 및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15) 최명해 외, 앞의 논문, 3면의 표를 수정 · 보완한 것임.

[표 2] 12.5 계획의 7대 신흥전략산업¹⁶⁾

산업분야	주요내용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 철강재, 건설자재, 공법 분야의 낙후 설비 및 기업 구조 조정 - 자동차, 가전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 등
1세대 정보기술	네트워크 설비, 3망(전신, 컴퓨터, TV 네트워크) 융합, 고 성능집적회로,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 등
바이오	바이오 농업, 바이오 제조업, 바이오 헬스케어, 광역 단위의 대형 제약사 육성 등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지열, 풍력, 원자력, 해양에너지, 바이오 소재, 핵 융합 에너지의 발명 및 응용 등
신에너지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혼합동력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에너지 동력 자동차, 태양에너지 동력 자동차 등
첨단장비 제조	궤도 교통설비, 해상유전 엔지니어링, 석탄화공, 전자직접 회로, 핵발전, 첨단 선반·공작 및 절삭기계 개발 확대 등
신소재	나노소재 중심의 신소재 및 고성능 복합소재 응용 등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은 주로 「11·5 계획」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 중서부지역은 대부분 10% 이상을 목표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서부지

16) 최명해 외, 앞의 논문, 4면의 표.

역은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12·5 계획」 기간에도 경제의 양적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제도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서부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한편,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 지분참여와 인수 · 합병 방식 등으로 중국 국내 자본기업에 대한 인수 · 합병을 장려하고 외자의 지분투자와 벤처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의 기업법제로 제 · 개정 될 것이다. 또한, 해외의 고급 인력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적극 장려된다. 또한, 외자 이용에 대하여는 현대 농업과 하이테크 기술, 선진 제조기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책문건과 법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7대 신흥전략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이 경쟁적으로 「12·5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3개 이상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5개 이상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지역이 전체 31개 지역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투자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그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도 함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득 연평균증가율 목표가 「11·5 계획」 기간에 비하여 상향 조정되었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¹⁸⁾ 이에 따라 성장하게 될 새로운 소비시장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수시장 관련 법제들이 함께 변화할 가능성성이 있다.

17) 노수연,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규획의 종합평가’,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1-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05.02, 1면.

18) 2012년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에 발표된 목표들도 「12.5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취업촉진과 실업률 해소,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무역규모 확대, 내수시장 확대 등이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김선영, ‘전인대 개막일 쏟아진 올 해 목표들’, 『China Spot』, 신영증권, 2012.03.05, 3면.

제 2 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중국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과 「12.5 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2011년 말 대폭 개정하여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이하, 지도목록이라 함)」을 마련한 바 있다. 동 목록에는 외국인투자 장려 종목과 제한 종목, 금지 종목이 제시되어 있어 중국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상무부(商务部)가 제시한 2012년의 「지도목록」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예정이므로 동 「지도목록」에 제한 또는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면, 관련 투자법규들도 그에 따라 그 심사나 허가요건이 엄격해지게 된다.

I.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1. 구 성

「지도목록」은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1955년 6월 이후 적용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대우를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부터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지도목록」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외국 자본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조업, 신흥전략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를 장려는 것이다. 첫 번째 내용에는 ‘장려형’ 규정이 추가되고 ‘제한형’과 ‘금지형’ 규정

이 삭제되었다. 그 중 의료기구, 금융대출회사 등에 적용되었던 ‘제한형’을 ‘허가’항목으로 전환하고 신생에너지발전설비 등 영역에서의 외국 자본 비중 제한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장려형’ 추가 내용으로는 방직, 화학공업, 기계제조 등 산업에서의 신제품, 신기술 관련 사항 및 가전제품폐기, 기계 및 전력설비, 건전지회수처리 사항들이다. 그밖에 신생에너지자동차 관련 부품, IPV6의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및 전동차충전소, 벤처투자기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포함한 9개 서비스 항목들도 추가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완성차) 제조관련 규정이 사라지고 실리콘, 석탄화학공업 등 일부 산업들에서 나타나는 과잉생산과 무질서한 중복건설 현상들을 막기 위해 이들 산업 관련 규정들도 ‘장려형’에서 사라진다.

2. 특 징

2011년 발표된 「지도목록」은 2007년 개정판과 비교하여 볼 때 4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있다. 첫째,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장려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둘째, 고기술 분야를 장려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잉생산 및 일반기술 분야는 장려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산업구조 및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신규로 포함된 대상은 기능성·특수 의복, 니켈 절약 스텐레스강 제품, 첨단기어박스(변속기), 공작기계·설비, 자동차 부품 재제조,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기반 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삭제된 목록으로는 자동차(완성차) 제조·개발, 데틸렌 및 그 하류제품, 유기화공 기본원료/부산물, 텔레프탈산(PTA), 차세대 IC 인식기술(RFID), 니켈-아연축전지 등이다. 셋째, 산업 및 경제적 통제가 강화되어 50만 명 이상 도시가스·열에너지·배수관망 건설·경영 및 대형 농산품도매시장 건설·경영 제한류 추가, 일부 서비스 지

분제한 추가, 영업형 통신회사는 외자지분이 50% 초과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초 통신업무는 외자가 49%를 초과 할 수 없다. 마지막 특징으로 지식 및 서비스 산업 개방이 확대되었다. 재생수 처리시설 건설·운영, 자동차충전소·전지교환소 건설·운영, 물류용 팔렛 및 컨테이너 시스템 건설·운영, 창업투자, 지시재산권, 가정서비스, 직업기능 훈련, 해상석유 오염처리, 해수 부영양화 방지, 해양생태 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2011년에 새롭게 발표된 「지도목록」은 장려대상을 늘리고 9개 서비스 업종을 장려대상에 추가하여 서비스 장려대상에서 서비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였다. 또한 제한대상과 금지대상을 축소하였고, 이번에 장려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향후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업종 목록」 수정 시 고려될 예정이다. 한편, 신흥전략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1) 장려업종

2011년 「지도목록」에 포함된 환경 및 녹색산업 분야로 추가된 장려업종은 농업·임업, 방직 산업, 피혁류 가공업, 화학산업, 비금속제품 산업, 전용설비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업, 공예품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생산도 장려 대상으로 확대되어, 교통운송 산업 분야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부품이 추가되었고, 전용설비 분야에서 저농도 탄광가스 및 폐품 이용 설비가 장려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유치를 확대하고 산업구조 조정이 동시에 수정되었다. 주요 업종별 첨단기술 분야 장려 확대 업종으로는 방직산업, 금속제품업, 일반설비업, 전용설비업,

전기기계업, 통신설비·컴퓨터·전자 제조업, 제어계측 및 문화·사무 기계 제조업 등이 있다.

한편, 외자기업의 신형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통해 신성장 분야와 서비스업 외자유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서비스 분야에 추가된 장려 대상은 재생수 처리시설, 자동차 충전소 및 전지변환소, 해상석 유 오염처리 및 복원·해수 부영양화방지·해양생태 복원 등이다. 창업 투자, 지식재산권, 가정서비스, 직업기능훈련 등의 지식 및 교육 분야 외국인투자 우대도 확대되었고, 첨단 물류 시스템 육성을 위해 물류용 팔렛 및 컨테이너 시스템 건설·운용 등도 장려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생산 증가와 기술력 제고에 따라 관련 업종 우대 축소도 추진된다. 주요 업종으로는 교통·운송업, 화학연료 및 제품업, 의료제조업, 일반 및 전용설비업, 통신설비·컴퓨터·전자·제조업, 제어계측 및 문화·사무기기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등이 우대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2) 제한류

2011년 「지도목록」에서 제한류 지정 및 삭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한류 업종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중국의 성 및 성급시 정부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제한류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국정부가 좀 더 큰 범위에서 득실을 고려해 비준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반대로 제한류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료 및 의약 제조, 고무·금속 제품, 통신설비·계산기·전자설비, 그리고 서비스 등의 세부 프로젝트 대해서 국가 통제를 완화하였다.

19) 정환우, 『중국 新<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의 내용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2.03, 12면.

반면,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의 자원소모 및 과잉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였다. 종합부동산 건설, 전략형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업종 규정 및 지분제한, 투자방식에 대한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 조정 및 규제를 강화하였다.

(3) 금지류

서비스업 금지 대상이었던 영상방영회사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사업 경영 중 음악분야의 금지를 해제하였다. 이외에 의약제조 분야의 금지대상 지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1, 2차 산업의 의약제조 분야는 그 내용이 동일하나 표현이 보다 상세화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의학 비밀처방제품 생산’이 ‘중국 한약의 정제기술의 응용 및 제약 비밀처방제품 생산’으로 수정되었다. 3차 산업의 문화, 체육, 오락 분야의 영상방영회사는 삭제되었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 인터넷 문화영역에서 음악은 금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부동산 분야의 별장 건설 및 영리 투자는 금지 목록에 추가되었다.

[표 3] 2012년 외국기업 투자 장려 목록 조정 내용

추 가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재생산업(전자제품, 전기설비, 전지 등 폐기물의 수거처리)- 현대서비스업(자동차충전소, 창업투자사, 지식재산권서비스, 해상석유오염처리, 직업기능훈련 등)- 의료기구, 금융리스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제조- 다결정실리콘(태양전지 소재) 생산- 석탄화학공업

II.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이하, 우대목록이라 함)」은 2008년 12월 23일 국무원·상무부 제18호령으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04년의 「지도목록」과 2006년 공고, 시행된 「요녕성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은 폐지되었다.

「우대목록」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항목은 외국인투자 장려류항목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부(财政部),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2011년 제58호령으로 제정한 「서부대개발 전략 유관 세수 정책의 심화적 실시문제에 관한 통지(关于深入实施西部大开发战略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²⁰⁾에 의한 혜택과 2007년 국무원령 제39호인 「기업소득세 과도기적 혜택 정책의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国务院关于实施企业所得税过渡优惠政策的通知)」²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1. 내용 및 특징

동 「우대목록」에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는 장려대상 외국인투자항목이 지니는 우대정책을 향유하게 되고, 목록상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 목록의 정책에 따라 집행 될 수 있다.

중서부지역의 장려 대상 업종은 연해지역 장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었던 업종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중서부지역에서 자동차부품이 투자 유망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서부지역 성 및 시별로 각자 특산 농사품 및 지하자원 가공을 장려

20)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11610269.html>

21) http://www.gov.cn/zwgk/2007-12/29/content_847112.htm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내몽고자치구, 강서성과 감숙성에서는 희토 심가공 및 응용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있고,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흑룡강성, 하남성, 귀주성, 운남성, 서서성에서는 석탄가공용 기술개발 및 생산을 장려한다. 또한 내몽고자치구, 광서자치구, 서장자치구, 영하자치구, 신강자치구는 소수민족 특수용품, 공예미술품, 포장용기 재료 및 일용유리제품 생산을 장려하고는 등 대부분의 중서부지역에서 지방특산농산품 가공을 장려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주요 지역별 우대 산업 목록

산서성은 24업종 스텐레스강 제품 생산, 실크제품 심가공, 고급유리 제품 고기술 도자기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 등을 포함한다. 내몽고자치구는 20개 업종의 희토 심가공 및 응용제품 생산, 도로여객 운수, 부가가치형 전신업무 등을 포함한다.

요녕성은 20개 업종으로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엔진크랭크축, 엔진전자분사시스템, 자동차속업쇼바, 클러치 등), 천연약·원료약·증성약 가공 및 그 부산물 생산, 고성능 자오선 타이어 등이 우대 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길림성의 경우 21개 업종의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엔진크랭크축, 엔진전자분사시스템, 자동차속업쇼바, 클러치 등), 의료기구(합자, 합작에 한함) 등이다.

흑룡강성은 26개 업종으로 석탄가공, 응용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중국 측이 지배주주), 육계·생돼지·육우 및 육양 사육 및 가공, 도로여객 운수, 삼림·빙설 여행자원 개발 및 스키장 건설·경영 등을 포함한다.

안휘성은 25개 업종, 자동차 부품, 신형건조법 시멘트 일관설비 제조 및 비금속광 종합 이용, 고성능자오선 타이어 생산 등이다.

강서성은 19개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 부가가치 전신업무, 고성능자오선타이어 생산, 의료기구(합자, 합작에 한함) 등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남성은 목록에 22개 업종을 포함하며 실크제품의 심가공, 고급 면 방직 및 의류 가공, 자동차부품, 대형 농용기계 개발 및 생산, 도로 여객운도(중국 측이 지배주주) 등이다.

호북성의 20개 업종은 실크제품 심가공, 자동차 부품, 고급 방직품 및 의류공예기술 개발, 무방포 및 의료용 방직품 생산 등이다.

호남성은 16개 업종으로 대구경, 강관재 가공, 부가가치 전신업무(중국 WTO 양허 프레임웍 이내), 실크제품 심가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서자치구는 17개 업종을 목록에 포함시키며 중정석 김가공, 고성 능자오선 타이어 생산, 자동차 부품, 소수민족 특수용품·민족특색공예품·포장요기재료 생산 등이다.

중경시는 20개 품목으로 절수 관개기술 개발 및 응요, 오토바이(외자 지분 50%이상) 및 부품 제조, 알루미늄 정밀 심가공(합자, 합작에 한함), 여행풍경구 보호·개발 및 경영 및 관련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다.

사천성은 21개 품목으로 생돼지, 육우, 육양, 가금류 생산 및 심가공, 실크제품 심가공, 천연가스 압축기, 부가가치형 전신업무, 도로여객운(중국 측이 지배주주), 도시 가스·물·배수관망 건설 및 경영(대도시 중국 측 주식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귀주성은 우대 목록에 19개 품목을 포함시키며, 가금류 육, 고추, 산약 등 심가공, 실크제품 심가공, 인·황산 화공 제품 생산, 도로여객운수(중국측이 지배주주) 등이다.

운남성은 18개 품목으로 아마가공 개발 및 부산품 종합, 실크 심가공, 동식물약재 자원 개발생산, 동식물 약재자원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장자치구는 13개 품목으로 모방제품 가공제조, 중약재·중약채취물·중성약 가공 및 생산, 소수민족 특수용품 공예미술품 포장용기재료 및 일용유리제품 생산 등을 목록화 하였다.

섬서성은 17개 품목을 설정하고 실크제품 심가공, 석탄가공응용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중국측 주식통제), 도로여객 운수(중국 측이 지배주주) 등을 포함한다.

감숙성은 17개 품목으로 과일 채소 화훼종자 개발 생산(중국 측이 지배주주), 회토 심가공 및 응용제품 생산 등을 목록화 하였다.

영하자치구는 16개 품목으로 소수민족 특수용품 및 신장음식 개발 가공, 풍력 태양광 발전설비 연구 및 개발 등이다.

청해성은 15개 품목, 우모제품 심가공, 도로여객운수(중국측이 지배주주), 직업교육기구(합작에 한함), 천연가스 하류화공제품 생산 및 개발 등을 우대 목록으로 하고 있다. 신강자치구(신강생산건설병단을 포함)는 25개 품목으로 천연향료 종식 및 가공, 실크제품 심가공, 방공 천연가스 회수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1. 적용되는 우대정책

동 「우대목록」에 따라, 장려류 외국인투자 항목은 우대정책을 받게 되며,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우대목록」에 규정된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해당 업무 수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어야 한다.²²⁾

기업소득세법 상의 낮은 기업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며, 수입제품은 면세적용 제외 품목 외에는 사용설비 수입 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 세가 면세된다. 또한, 기업의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외국인 투자 항목 수입제품 면세 비적용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국산 설비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한다.

22) http://cnlaw.co.kr/bbs/view.php?id=4&page=2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6&PHPSESSID=043afb66f32e96a00627bdbe8df5fb89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중국산설비와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국내 공정 위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국내 은행이 고정자산투자에 위안화 대출을 제공할 경우, 고정자산투자와 위안화 대출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은행이 자체 평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위안화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이 허가된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은 금융위기 후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중서부 지역에 주요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외자유치를 적극유치하고 있다. 「우대목록」에서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은 외국인투자자를 중서부 지역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²³⁾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1/4분기 GDP와 고정자산투자가 목표치와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우대목록」은 2007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개정판을 발표한 이후 중서부 지역 산업 지도 목록을 발표한 것으로, 중국정부가 향후 ‘산업 구조조정,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도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과 중서부지역의 우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⁵⁾ 「12.5 계획」, 「지도목록」의 내용과 「우대목록」, 그리고 「국무원 9호 문건」 등의 정

23)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 : 중서부지역’,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9-23호, 2009.12.02.

24) ‘中 중서부지역 경제성장을 급증세’, 연합뉴스, 2011-07-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1/0200000000AKR20110721084000089.HT
ML (방문일자: 2012-06-13)

25) http://kr2.mofcom.gov.cn/aarticle/bilateralvisits/201201/20120107936142.html

책들이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의 신흥산업, 서비스산업 및 첨단제조 산업들은 외국자본을 흡수하여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2010년 4월 국무원은 국무원령 제9호로서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이하, 국무원 9호 문건)」을 제정하여 외자의 이용 구조,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 외자이용방식, 외국인투자 관리체계, 투자환경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²⁶⁾

I .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1. 외국인투자 장려항목과 제한 항목

중국의 경제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그리고 국가산업조정과 진흥계획의 요구에 따라 「지도목록」을 개정하고 개방영역을 확대하며, 첨단제조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 엄격히 ‘3高(고에너지소모 · 고오염 · 고자원소모)’산업과 저효율 내지 과도한 생산능력 확장을 규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 부처가 되고, 상무부가 유관부처가 된다.

26) 국무원 사무처는 2010년 8월 18일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지침의 근거로 「국무원의 외자이용 업무개선을 위한 의견 관철을 위한 업무분장방안에 관한 통지(貫彻落实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若干意见部门分工方案)」를 마련하였다. 즉,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처와 관련 있는 경우에 부처 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그 중 주관 부처는 업무 간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연간 업무상황을 일괄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사무처는 주요 업무 수행상황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국가산업조정과 진흥계획

국가산업조정 및 진흥계획 중 정책 관련 조치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부처이고, 공업정보화부가 관련된다.

3. 토지의 집약적 이용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장려부류의 외국인투자 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며, 토지출양 최저가격 결정 시, 소재지 토지 등급에 대응되는 「전국 공업용지 출양 최저가격 기준」의 70% 이상의 가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국토자원부가 주관한다.

4. 하이테크 산업

외국인투자 하이테크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개선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의 부처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5. 연구개발에 대한 중외합작 장려

외국인투자지분과 중국지분이 함께 출자되는 중외기업의 연구개발 합작을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자기업, 연구기관과 합작하여 국가과학기술개발프로젝트, 혁신능력 건설프로젝트 등을 신청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가 관리한다. 또한, 국가급 기술센터의 설립 신청을 인정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6. 다국적회사의 연구센터 설립 장려

다국적 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 연구개발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및 원가와 이익채산센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상무부가 외환관리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상행정관리총국과 함께 관리한다.

2010년 12월 31일 전에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개발용 상품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재정부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유관부처가 된다.

7. 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

지원정책을 관철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서비스아웃소싱 산업을 장려하며,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국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과 관련하여서는 상무부가 주관부처가 된다.

II. 중서부지역 투자의 장려

1.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의 개정

「지도목록」 개정 상황에 따라 「우대목록」을 보충, 개정하고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항목을 증가시켜 외국인투자자가 중서부지역에 환경보호 요건에 부합되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²⁷⁾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하고 상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27) 「지도목록」은 2011년 말 개정되어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와

2. 조세 우대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서부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한다. 재정부가 주관부처가 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무총국이 유관 부처가 된다.

3. 외자은행의 영업 장려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과 기술자금에 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공상행정, 세무, 외환, 사회보험 등 수속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 부처가 되고, 상무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상행정관리총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세무총국, 외환관리국이 함께 관리한다.

외자은행의 중서부지역 지점 설립을 통한 은행 영업을 장려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하고 관리한다.

4. 동부연해지역과의 협력

동부지역은 시장 원칙에 따라 중서부지역에서 위탁관리, 투자협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 발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이익 공유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구를 건설하는 것이 장려된다.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에틸렌 등 과잉생산 및 일반기술 분야는 장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침단·지식·서비스,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 품목은 확대된 바 있다.

III.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

1.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상장회사 인수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참가,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A주식 상장 회사²⁸⁾의 중국 역내·외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며, 역내 펀드투자와 기업 인수에 대한 외자 참여를 규범화 한다. 상무부가 주관하여,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가 함께 관리한다. 이 때, 관련법에 따라 반독점 심사를 실시한다.²⁹⁾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각 담당업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한 안전심사제도를 신속하게 수립한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담당한다.³⁰⁾

28) 중국에서 A주식은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가진 투자자 내지 전략적 투자가 아니면 외국인투자자에게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투자자 전용 주식이다. 일반 외국인투자자는 B주식 만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의 관련 법규인 「적격해외기관투자자 관리방법(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管理办法)」에 따라 적격해외기관투자자는 요건에 부합되는 해외 기관투자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의 허가를 얻어 외화자금을 송금한 후 인민폐로 바꾸고, 전용 계좌를 통하여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그 원금, 자본이득, 이익 배당금 등을 허가를 받아 다시 외환으로 바꾸어 국외로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02년 11월 5일 도입된 이래 2003년 6월 처음으로 적격외국기관투자를 허가한 이래 현재에는 투자 한도를 500억 달러까지 증액시켰으며, 158개의 적격외국기관투자가가 운용되고 있다.

29) 실제로 이 지침에는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이 적용되며, 기업결합(经营者集中) 신고와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각 부문규장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후술한다.

30)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2011년 2월에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통지」를 발표하고, 이어 상무부가 2011년 8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후술한다.

2.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국가발전전략 및 기업 내부수요에 따라서 해외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며, 양측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쟁력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³¹⁾ 이에 대하여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3. 중소기업담보회사의 설립

외자유치에 의한 중소기업담보회사 설립 시범업무를 추진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동 업무를 관리한다.³²⁾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을 장려하며, 사모주식투자기금을 적극 이용하고 퇴출 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 이에 대하여는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행정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이 담당한다.

31) 적격국내투자자제도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전용계좌를 통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상업은행의 고객 위탁 해외금융상품업무, 보험자금의 해외 운용업무 및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증권투자 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 관리실시방법(合格境内机构投资者境外证券投资管理办法)」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32) 2011년 11월 1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베이징에서 중외합자담보회사 투자계약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외자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담보회사를 설립하는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자담보회사의 계약금액은 총51억 위안에 이르며, 현재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담보회사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측의 주요 투자자는 중국수출입은행, 하이항자본지주, 바오스틸 등의 회사이고, 외국투자자측은 미국의 모건스탠리와 독일의 지맨스 등이다. 이번 합자담보회사의 설립은 「국무원 9호 문건」의 성과이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방식 다양화의 혁신적인 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와 시도를 지속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합자담보회사는 담보대출, 계약이행담보, 채권담보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될 전망이며, 중소기업지원을 목표로 한다(http://www.korcharm.net/EconNews/EconTopic/CRE05104R.asp?m_UNIBDCD=32329&m_GUBUN=B010 참조).

4.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주식시장 상장,³³⁾ 사채 및 증기어음의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자금 조달 방식을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해외 주체의 범위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한다.³⁴⁾ 이에 대하여서는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관리하도록 한다.

IV. 외국인투자 관리체계의 개혁

1. 지방정부의 심사 · 허가권한 확대

「지도목록」 중 투자총액(자본금 증가 포함)이 3억 달러 미만인 장려부류, 허가부류 항목은 「정부가 인가하는 투자항목의 목록(政府核准的投资

33)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 발전개혁위원회)는 ‘12.5 계획 기간 상하이 국제금융허브 건설 계획’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역외투자 유도를 위해 국제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상하이 증권시장에 ‘국제판’을 설립해 요건을 갖춘 역외기업의 위안화 주식 발행을 지원하고 외국기관의 중국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 주체와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증권시장의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투자규모 ·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자본의 선물시장, 금융 파생상품 등 금융시장 투자에 관한 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까지 상하이를 위안화 금융상품 거래 · 투자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해외 금융기관과 금융 기구를 상하이에 적극 유치하고 금융 대외 개방을 가속하며, 각종 위안화 금융 상품 개발, 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http://www.onbao.com/news.php?code=AI&m=2&mode=view&num=33554&page=1&wr=\(방문일자: 2012-06-13\)\)](http://www.onbao.com/news.php?code=AI&m=2&mode=view&num=33554&page=1&wr=(방문일자: 2012-06-13)).

34)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무역결제는 미 달러 위주로 이뤄졌으며, 일부 국경무역에만 위안화 결제가 허용된 상황이었으나, 2009년부터 위안화 결제를 국경무역에서 국제 무역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2009년 4월 대외무역거래가 활발한 상하이, 광저우 등 5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홍콩, 마카오, ASEAN 무역에서 위안화 무역결제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시범 지역에 18개 성을 추가하는 한편 거래 상대국 범위도 폐지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는 현재 홍콩, 마카오의 위안화 결제은행 또는 중국내 대리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项目目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정부 유관부처가 심사·허가하도록 한다.³⁵⁾

국무원 상무부는 법률 내지 행정법규에서 상무부가 심사·허가하도록 강제되어있는 사항 외에는 그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심사·허가 사항을 지방정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금융, 통신서비스 제외³⁶⁾)은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할 수 있다.

2. 심사·허가제도의 개선

심사·허가 내용을 조정하고 심사·허가 절차를 줄임으로써 최저한도로 심사·허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심사·허가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그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심사·허가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심사·허가방식을 개선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전국 범위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표준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행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 한다. 이에 대한 관리 담당 부처는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가 된다.

35) 동 문건을 기초로 하여 「외국인투자 심사허가권한 이관 문제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와 「외국인투자 관리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商务部关于外商投资管理工作有关问题的通知)」 등이 마련된 바 있다.

36) 금융서비스분야와 통신서비스분야는 중국이 아직 전면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중 FTA 협상 시 두 분야에 대한 한국 측의 개방 요구가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치훈, ‘최근 한중 FTA 환경변화 및 금융협력 가능성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10, 5~7면; 이시욱, ‘한·중 FTA 서비스부문의 주요 쟁점’, 2012 한·중 FTA 토론회 자료집, KIEP, 2012.01.31; 송원근·최남석,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중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12.01.26, 21면; 성한경,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분야 검토-서비스분야’, 한·중 FTA 공청회 자료집, 외교통상부·무역협회, 2012.02.24, 99면).

V. 투자환경의 조성

1. 개발구의 발전 촉진

개발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개발구에서 체제혁신, 과학기술 선도, 산업집결, 토지집약 면에서의 경험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발휘되도록 한다.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 과학기술부, 상무부가 담당한다.

요건에 부합되는 성급 개발구의 승급을 지원하며, 조건을 구비한 국가급 개발구의 확장과 구역 조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업무는 상무부, 과학기술부가 책무에 따라 주관하며,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참여한다.

요건을 구비한 성급 개발구의 확장 및 구역조정을 지원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성향건설부, 과학기술부, 상무부가 이를 담당한다.

한편, 국경 부근 경제협력구의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업무는 상무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2. 외환관리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관리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 결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외환관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외환관리국이 담당부처가 된다.

적법하게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하여 출자기간에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자기한 연기를 허용한다. 이는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상무부가 관리한다.

3. 외자유치 업무 강화

투자촉진업무를 강화한다. 주요국과 주요지역, 주요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 업무를 강화하고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도록 한다. 양자 간 투자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를 함께 시행하고, 국경 간 투자에 대한 정책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V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용되고 있는 적격외국기관투자가가 158개에 달하고 있고, 투자 한도가 500억 달러까지로 증액되어 있어서 적격외국기관투자가를 통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1년 11월 11일 중외합자담보회사 설립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투자방식 다양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중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와 시도를 지속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³⁷⁾

또한, 각종 인허가 절차나 심사제도를 명확화하고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환 관리도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과 관련 안전심사제도에 따라 중국의 주요 전략산업이나 기간산업, 주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분제한과 함께 국가 브랜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37) 孙刚, ‘进一步利用外商直接投资的对策和建议’, 『经济参考研究』, 2009年 第12期(总第212期), 35页; 袁东升, 王春超, 李颖, ‘我国中小企业利用外资的现状与对策’, 『广西社会科学』, 2009年 第3期, 49~52页.

제 2 장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시 규제가능성이 크다.³⁸⁾ 한·중 FTA 협상 시에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하여서는 열거방식을 통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8) 张广荣, ‘怎样认识外资并购中的“国家安全审查”’,『世界知识』, 2011年 06期, 13页.

제 3 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제 1 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특징

I. 구조와 형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법률은 일반법인 회사법 보다 먼저 제정되어 나름대로의 독자적 체계를 갖추면서 발전해 왔다.³⁹⁾ 즉, 100%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및 그 실시세칙, 합자기업에 적용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및 그 실시세칙,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그 실시세칙을 주된 법규로 하고, 그 외에도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 각 업종별(부동산, 금융업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별도의 법규들로 구성된 방대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해 왔다. 이는 회사의 주주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내국민대우의 확대와 중국 회사법의 실무적 적용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틀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이하, 전인대라 함)를 통과한 정식 법률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통지’나 ‘의견’ 등의 명칭으로 중국 입법체계 상 행정법규나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지방 조례 등의 형식으로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발휘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실무상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⁴⁰⁾

39) 변웅재, ‘중국의 외자기업 설립법제’, 워크숍 자료집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58면.

40) 예를 들어, 2006년 7월 11일자로 중국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에

II. 인허가 시스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법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중국의 인허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국의 인허가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⁴¹⁾

첫째, 개별 사업항목에 대한 발전개혁부문의 허가(核准)절차가 있다. 중국의 발전개혁부문이란 중앙정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각 지방별 발전개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발전개혁부문의 인허가 절차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다른 부문들의 인허가 절차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허가는 많은 기업들이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허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조정하거나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기도 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에 대한 큰 틀에서의 통제와 토지자원과 같은 중국의 유한자원들을 각 산업별로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다른 부문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상무부문의 허가(批准) 절차가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발전개혁부문의 허가와는 별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자체에 대한 비준으로서, 상무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 지방의 상무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는 외국인 투자 유치(招商引资)를 주된 임무로 하는 상무부문의 특성상 다른 절차보다는 보다 용이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상무부의 허가는

대한 외자 진입을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은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규이다.

41) 변웅재, 전계논문, 59~60면.

앞에서 살펴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혜가와 마찬가지로 다소 까다롭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대한 공상행정부문의 등기 절차가 있다. 공상행정부문이란 중앙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을 정점으로 하여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리부문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으로서, 상무부문의 혜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등 기업무와 사후 관리⁴²⁾를 담당한다. 이는 앞의 두 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해되고 있으나, 현행 개정 회사법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⁴³⁾

넷째, 위의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 외에 각 업종별로 당해 업종에 대한 감독관리기관의 혜가 절차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의 개별 인허가 절차가 있으며, 그 외에도 의약관련 사업, 문화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주관부문의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III. 외환거래 규제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의 외국환거래 규제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된다. 중국은 비교적 엄격한 외국환거래 규제시스템을 보유한 나라이로서,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42) 주로 연도검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43) 당시 일부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회사법상 ‘감사’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등기를 거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감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옹재, 전계논문, 60면). 이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회사등기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公司登记管理若干问题的规定)」 제12조에서 ‘회사 정관에 법률, 행정법 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등기신청을 거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 부동산회사의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고(备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환관리국에서 환전을 해주지 않고,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중국 내에 회사 설립을 위한 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일부 비용 송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국에 송금을 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의 외국환 거래규제는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 외국의 중국기업 인수 희망자로서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에야 비로소 대금 지급과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인수 희망자에 대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제 2절 외국기업 설립 법제의 변화 방향

I. 허가 권한 이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관련한 허가 권한과 관련하여 중국은 점차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2월 25일 제정된 「외국인투자 관리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商务部关于外商投资管理工作有关问题的通知)」에서 상무부는 거래금액이 3억 달러 미만인 외자 인수·합병은 성급 상무주무부서가 책임지고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종래 상무부에서 직접 허가 및 관리하던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와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인허가에 있어서도 반영된다.⁴⁴⁾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허가권한 분리 기준 금액은 3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다시 3억 달러로 상향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하여 보다

44) 2010년 6월 10일의 「외국인투자 심사허가권한 이관 문제와 관련한 상무부의 통지(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审批权限有关问题的通知)」 제4조.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외국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외국투자자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II. 규제 강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민감 영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는 오히려 보다 강화되고 있다.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중국기업 인수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규정이 실행되었다. 즉, 국무원의 2011년 2월 3일자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 · 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⁴⁵⁾ 및 상무부의 2011년 8월 25일자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 · 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⁴⁶⁾에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군수공업 및 군수공업 협력 회사,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기업 및 국방안전 관련 기타 업체를 인수 · 합병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하고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안전심사 부처 간 연석회의(安全审查部际联席会议)」⁴⁷⁾에 의한 안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중국기업 인수와 관련된 종래의 인허가 절차에 추가하여, 중국의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5) http://www.gov.cn/zwgk/2011-02/12/content_1802467.htm

46) http://www.gov.cn/gzdt/2011-08/26/content_1934046.htm

47) 안전심사통지 제3조에서 연석회의의 업무내용과 운영체제,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실무(합자회사 설립 및 기존 회사 인수 경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허가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신고는 예외 없이 모두 상무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많은 거래에 있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기업결합을 ‘사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인수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중국입장에서 민감한 특정 산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출판물 출판, 제작, 신문사이트,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문화경영(음악 제외)은 「지도목록」 상 명시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지 대상이 되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도⁴⁸⁾ 종래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이었던 ‘별장(別墅)’사업을 외국인투자금지 항목으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계약통제(协议控制)’방식⁴⁹⁾에 의한 외국인의 중국에 민감한 영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고신고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의 예로써는 안전심사규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대리보유, 신탁, 중첩 구조에 의한 재투자, 계약통제, 국외 거래 등 어떤 방식으로도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실질적으로 회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相宇, ‘外商投资房地产行业新政的法律解读’, 『经济与法制』, 2011年 2月, 2011, 237~239页.

49) 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예를 들어 인터넷 문화 사업)에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으로서, 실제 중국 내 사업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외국투자자 및 그 중국 내 자회사는 아무런 지분 관계를 가지지 않고, 다만 각종 계약 관계를 통하여 실제 중국 내 사업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III. 기업 형태의 다양화

종래 외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인투자 주식회사라는 전통적인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설립 방식에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외국인투자기업 형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투자 조합기업(合伙企业)이다. 이는 2인 이상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조합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조합기업을 설립하는 제도이다. 보통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조합기업’,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약정한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유한 조합기업,’ 그리고 ‘특수 조합기업’⁵⁰⁾으로 그 종류가 나누어져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체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 조합기업은 전통적인 출자 목적물인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외에도 노무출자가 가능하며, 다른 외국인투자기업과는 달리 상무부문의 사전 비준 절차 없이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지방상무부문에 통보)함으로써 바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허가 사항이어서 그 설립이 쉽지 않았던 외국인투자 주식회사(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허가 사항으로 변경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분 투자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종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의 지급

50) 특수 조합기업은 전문지식과 전문기능을 가지고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기구의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1인 또는 수인의 사원이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업에 채무를 가져다 준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은 그 기업의 지분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환전 관리에 관한 통지(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通知)⁵¹⁾에 따라,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외환등록자본금을 바로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내 지분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규정에 기하여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지분 투자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종래 중국 내에서 지분투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⁵²⁾와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规定)」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심사관리의 통지(关于完善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备案管理的通知)⁵³⁾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국한되었다. 단,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수익금인 인민폐 자금으로 중국 내 다른 회사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만 설립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은 그 투자 대상이 주로 비상장 하이테크기업에 국한되며, 창업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관리 경력이 있는 필수 투자자가 필요한 것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이 많았다.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는 중국의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을 환전하여 지분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도입된 회사형태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지분투자가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⁵⁴⁾ 앞

51)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law_detail.jsp?ID=804030000000000000,30&id=4

52)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4313.htm

53) <http://wzs.mofcom.gov.cn/aarticle/n/201205/20120508127784.html>

54)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회사 지분투자의 경우에 원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에 따라 1) 등록자본금 완납, 2)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 3) 중국내 누계 투자액이 순자산의 50% 초과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후 국가공상행정총국의 별도 규정에 의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설립도 가능해졌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적격 외국인 유한책임사원(合格境外有限合伙人,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 QFLP)’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⁵⁵⁾,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의 독보적 지위는 예전과 같지 않다. 또한,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의 장점 중의 하나는 대출한도에 있어서, 등록자본금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출자한 등록자본금의 4배, 등록자본금이 1억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출자한 등록자본금의 6배로서 통상적인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대출한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 상무부·외환관리국이 2011년 12월 8일자로 발표한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 관리조치 개선에 관한 통지(商务部、外汇局关于进一步完善外商投资性公司有关管理措施的通知)」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의 중국내 대출은 중국내 재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장점도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만을 가질 수 있어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없어 상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지분으로 현물출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는 현금 출자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보유 비율 10%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외국인투자 투자성 회사의 인수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 투자성회사가 실질적으로 투자 전문 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5) 외국인투자 조합기업이 허용됨에 따라서 북경, 상해, 중경, 천진을 중심으로 하여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기업 형태의 지분투자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를 적격 외국인 유한책임사원이라고 부른다. QFLP는 중국 외의 기관투자자가 자격심사 및 외화자금의 관리·감독절차를 거쳐서, 중국 국외 자금을 인민폐 자금으로 환전하여 중국 내의 사모지분투자(PE) 및 벤처캐피탈 투자(VC)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상으로 엄격히 보면, 외국인투자 조합기업 형태의 중국의 인민폐펀드에 외국투자가가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만을 의미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된다.

IV. 지방 법규의 정비

적격외국인유한책임사원과 관련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규는 아직 없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법규는 점차 정비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2010년 12월 24일 상해시 정부가 제정한 「상해시 외국인투자 지분투자기업 시범사업에 관한 실시방법(关于本市开展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试点工作的实施办法)」이 있다. 또한 2011년 10월 14일 천진시 정부가 제정한 「천진시 외국인투자지분투자기업 및 그 관리기구의 시범사업관한 임시방법(关于本市开展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及其管理机构试点工作的暂行办法)」 및 「천진시 외국인투자지분투자기업 및 그 관리기구의 시범사업에 관한 임시방법의 실시세칙(关于本市开展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及其管理机构试点工作的暂行办法的实施细则)」 등이 있다. 상해시와 천진시의 위 규정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상해시와 천진시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기업 관련 규정 주요 내용⁵⁶⁾

항 목	상해시 규정(2010.12.24)	천진시 규정(2011.10.14)
주관부문	상해시 금융판공실	(시범기업의 경우) 천진시 발전개혁위원회
지분투자 관리회사 형태	회사, 조합기업	(시범기업의 경우) 회사 또는 유한합자조합

56) 변웅재, 앞의 논문, 66~69면의 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항 목	상해시 규정(2010.12.24)	천진시 규정(2011.10.14)
지분투자 관리회사의 경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투자회사의 발기설립 - 지분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수임하여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 지분투자 자문 등 	<p>(시범기업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투자회사의 발기설립 - 지분투자기업의 자산을 위탁 받아 관리 - 관리하는 지분투자기업이 투자한 기업을 위하여 관리서비스 제공 - 지분투자 자문 등
지분투자 관리회사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투자 또는 지분투자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투자자 최소 1인 이상 -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고위 임원 보유 - 등록자본금(또는 약정 출 자액) 200만 달러 이상(3 개월 이내 20% 납입, 2년 내 전액 납입) - 출자 방식은 현금만 가능 	<p>(시범 기업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납입 자본금이 인민폐 1,000만 위안 이상 -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고급관리인원이 적어도 2명(상당수가 중국국민) - 천진시의 신흥전략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을 약정
지분투자 관리회사 설립 절차	<p>회사제 형태:</p> <p>市 상무위에 신청 → 市 금융판공실 의견 조회 → 市 상무위 비준 → 공상등기 → 외환등기</p> <p>파트너쉽 형태:</p> <p>市 공상국에 신청 → 市 금융판공실 의견 수렴 → 공상등기 → 외환등기</p>	<p>시범 기업의 신청은 市 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하여 시범기업 기초심사와 시범 기업 인정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됨(관 련 부처들로 구성된 별도팀의 의견 수렴)</p>

제3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항 목	상해시 규정(2010.12.24)	천진시 규정(2011.10.14)
지분투자 회사 형태	조합기업	(시범기업의 경우) 회사 또는 유한합자조합
지분투자 회사의 경영범위	자체 자금으로 지분투자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자문 제공	
지분투자 회사의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영역에 투자 - 2급 시장에서 주식 및 기업채권 거래(피투자기업이 상장한 경우 제외) - 선물 등 금융파생상품 거래 자체 사용목적 아닌 부동산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 - 자체 자금이 아닌 자금을 횡령하여 투자 - 타인에게 대출 또는 담보 제공 -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설립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사항 	<p>(시범 기업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금지 종목 - 2급 시장에서 주식 및 기업채권 거래(투자대상기업이 상장한 경우 제외) - 선물 등 금융파생상품 거래 - 자체 사용목적 아닌 부동산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 - 자체 자금이 아닌 자금을 횡령하여 투자 - 타인에게 대출 또는 담보 제공 -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조합 계약)에서 금지하는 기타 사항
지분투자 회사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투자액 1,500만 달러 이상 - 무한책임조합원을 제외하고, 각 유한책임조합원의 최저 출자액은 100만 달러, 출자 방식은 현금만 가능 	<p>(시범기업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인민폐 5억 위안 이상이며, 지분투자 관리회사가 일정 부분 출자(5% 이하) - 각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은 1,000만 달러 이상

항 목	상해시 규정(2010.12.24)	천진시 규정(2011.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지분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주권기금, 양로기금, 증여기금, 자선기금, fund of fund,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자기 자산 규모 5억 달러 이상 또는 관리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신청하는 사무집행 조합원이 3년 이상의 중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경력 등을 요건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주권기금, 양로기금, 증여기금, 자선기금, fund of fund,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자기 자산 규모 5억 달러 이상 또는 관리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5년 이상의 관련 투자 경력을 요건으로 함
지분투자 회사의 설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기업 市 공상국에 신청 → 市 금융판공실 의견조회 → 공상등기 → 외환등기 - 시범 지분투자회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市 금융판공실에 신청 → 다른 부처와 연석회의를 거친 후 市 금융판공실에서 결정 → 회사 설립 후 市 금융판공실에 등록하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기업의 신청은 市 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 - 시범 기업에 대한 심사는 기초심사와 시범기업 인정의 2 단계 절차로 진행(관련 부처로 구성된 별도팀의 의견 수렴)
지분투자 관리회사의 출자 한도	시범 지분투자 관리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모집 투자 자금의 5% 내에서 자신이 발기 설립하는 지분투자회사에 외화 출자 가능(이 경우 지분투자회사의 원래 속성은 변하지 않음)	시범 지분투자 관리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실제 납입된 투자금의 5% 내에서 자신이 발기 설립하는 지분투자회사에 외화를 환전하여 출자 가능(이 경우 투자 받는 조합기업의 원래 속성은 변하지 않음)

제3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항 목	상해시 규정(2010.12.24)	천진시 규정(2011.10.14)
투자 대상 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함	외국인투자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발전개혁위원회의 항목별 허가와 상무부문의 외자기업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함
환 전	외국인투자 지분투자 시 범 기업은 수탁은행에서 외화를 처리하여 중국 내 지분투자 가능함	허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 수탁은행에서 실제 사업의 필요에 따라 환전(투자대상기업 소재지의 발전개혁위원회로 부터 외자 투자에 대한 항목별 허가와 상무부문의 외국인투자 허가 증서, 투자대상기업과 체결한 투자의향서 등을 제출)하며, 환전 후 7영업일 이내에 투자로 지출되어야 함(다만, 지분투자 관리기업이 출자한 것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위요건을 요하지 않음)
기 타		설립 후 3년 이후부터 투자 회수 가능하며, 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적격 외국인 유한책임사원 제도의 원래 취지는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중국 내에 지분투자 할 자금을 먼저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지분투자를 할 사업 항목을 발견한 때 수시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앞에서 설명한 중국 내 인수·합병에 있어서 외국투자자의 불리한 지위⁵⁷⁾를 극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

57) 외국의 중국기업 인수 희망자로서는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후에야 비로소 대금 지급과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인수 희망자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로는 앞의 표에서 살펴본 천진시 규정과 같이 협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 수탁은행에서 실제 사업 항목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환전하게 된다. 이 때 투자대상기업 소재지 발전개혁위원회의 외자 프로젝트 허가와 상무부문의 외국인투자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민폐 환전 후 7영업일 이내에 투자로 지출되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적격 외국인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 외국인투자 금지 영역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의 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분투자 관리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실제 납입된 투자금의 5% 내에서 자신이 발기 설립하는 지분 투자회사에 외화를 환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받는 조합기업의 원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외국투자자가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5%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다른 외국인 유한책임사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투자영역에 제한이 없는 내국인 대우를 해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유한책임사원을 중국 내에서 찾아야 하므로 중국 내에 유력한 ‘인맥(关系)’이 부족한 외국투자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북경과 상해 등의 지역에서 매우 특별한 허가를 통해서만 적격외국인유한책임사원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⁵⁸⁾

V. 새로운 영역의 규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역이 사모지분투자(PE) 영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무청이 제정한 2011년 11월 23일자 「지분투자기업 규범 발전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关于促进股权投资

58) 북경의 경우 2건으로 JP Morgan Asset Management가 대표적 사례이며(QFLP 승인 규모 10억 달러), 상해의 경우 2011년 말까지 14건, 30억 달러 한도의 QFLP를 승인한 바 있다(Carlyle, Black Stone 등).

资企业规范发展的通知)』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통지에서는 1) 회사법 또는 조합기업법의 적용, 2) 적격 투자자에 대하여 사모 방식의 투자 모집만 가능, 3) 투자자에 고정수익 보장 못함, 4) 현금 방식으로만 출자 가능, call 방식(약정제)도 가능, 5) 투자자 수는 회사법과 조합기업법에서 규정한 제한을 준수, 6) 투자대상은 비공개적 거래의 지분에만 투자 가능하며, 유휴자금은 은행 또는 국채 등 고정수익 자산에만 투자 가능, 7) 외자 PE가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8) 투자대상기업 외의 기업에 담보 제공 금지, 9) 자본규모가 인민폐 5억 위안 이상인 경우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 인민폐 5억 위안 미만인 경우 성급 정부가 지정한 부처에 등록(창업투자 등록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나 사실상 단독 출자인 경우 제외), 10)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의 경우 3개월, 운영 방식의 경우에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위 규정은 외자 사모지분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투자 지분투자전문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사모지분투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허가제처럼 운영될 가능성성이 있다.

제 3 절 외자기업 관련 법규

I .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조합기업 설립 관리방법

2009년까지는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중국 「회사법」과 「3자기업법」 그리고, 「지도목록」에 따라 외국인독자 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의 세 가지 형태만 가능하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외국인투자자도 조합기업의 형태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3월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조합기업 설립 관리방법(外國企業或者個人在中國境內設立合伙企業管理辦法)」이 시행되어 외국 투자자는 기존의 3자기업법(합자, 합작, 독자) 형태 외에도 중국 내에 조합기업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 진 바 있다.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함께 조합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 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고 지방 상무주 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의 조합기업 설립금지 업종은 「지도목록」에서의 금지 목록과 동일하다. 조합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5]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독자, 외국인투자조합기업의 비교⁵⁹⁾

구 분	중외합자 기업	중외합작 기업	외국인독자 기업	외국인투자조합기업
근거법규	중외합자 경영기업 법 및 실시 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 법 및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조합기업법 ⁶⁰⁾ 및 외국 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조합기업 설립 관 리방법
기업형태	유한책임 회사	유한책임회사 연합경영체	유한책임 회사	일반조합기업 또는 유한조합기업
경영권 · 이익배분	출자 비율	계약내용 (통상 투자수익 조기 회수)	투자가 단독결정	사원 간 협의
법인세	동 일			없음. 개인소득세만 납부
최고의사 결정	이사회	- 이사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이사회 없음. 사원 간 협의

59) 위의 표는 최정식, 「외국인투자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중국법연구』제10집, 한중법학회, 2009, 5면과 진정미, 「G2시대 중국의 Post-외국인 투자 「정책과 법규」 변화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2012, 136면에 서의 표를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60) 「조합기업법(合伙企业法)」은 1997년 제정되어 2006년 개정된 바 있고, 2007년 6

제 3 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구 분	중외합자 기업	중외합작 기업	외국인독자 기업	외국인투자자조합기업
자본 감자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인가기관의 허가를 받은 감자는 가능			
외국투자자 최저 지분	등록 자본금의 25%	전부 또는 대부분 의 자본 · 기술 · 설비제공	등록자본금 의 100%	최저지분 없음. 사원 간 협의
청산 후 자산 처리	지분 비율로 배분	통상 고정자산은 중국 측에 무상 귀속	잉여자산은 회수	청산 시 무한책임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생산판매기업 50만 위안 - 무역회사 10만 위안 - 1인 회사 10만 위안 - 유한책임회사 3만 위안 			최저등록자본 없음
투자자	제한 없음			2인 이상
출자방식	현물, 현금, 지식재산권 출자			현물, 현금, 지식재산권, 노무 출자
책임범위	유한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책임사원 존재 (일반적으로 기업 운영 책임자) -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경영에 관여하지 못함.

II.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 · 합병에 관한 규정

2009년 6월 개정(2006제정)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기업 인수 · 합병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规定)」에서는 외국

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조합기업법은 총칙과 일반조합기업, 합자조합기업, 조합기업의 해산 · 청산, 법적 책임, 부칙의 6개 장, 10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투자자⁶¹⁾가 중국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동 규정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제도, 제3장 심사비준과 등록, 제4장 제3자 인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M&A), 제5장 반독점심사, 제6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9년의 개정을 통하여 제5장 반독점심사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다만 제6장 제51조에 ‘외국인투자자가 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기업결합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를 먼저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주요 산업과, 유명 상표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게 되는 경우⁶²⁾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⁶³⁾

III.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

2007년에 제정된 중국의 반독점법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의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와 함께 국가안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2011년 2월 국무원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역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이하, 통지라 함)」⁶⁴⁾와 2011

61)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는 (i)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국내기업) 주주의 지분이나 국내기업의 중국 축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국내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하, 지분 M&A), (ii)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것, (iii)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자산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하, 자산 M&A)을 말한다(동 규정 제2조).

62)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국가안전심사제도와 관련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63)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中国政府网, 2009年12月02日.

http://www.gov.cn/zwgk/2009-12/02/content_1478238.htm (방문일자: 2012-06-13)

64) http://www.gov.cn/zwgk/2011-02/12/content_1802467.htm

년 8월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의 실시에 관한 규정(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이하, 규정이라 함)」⁶⁵⁾이 마련되고,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자에 적용될 국가 안전심사제도가 윤곽을 드러내었다.

1. 안전심사의 범위

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 첫째, 중국의 국내 군수기업 및 군수 관련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의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또는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타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이다. 둘째, 주요 농산물, 주요 에너지 및 자원, 중점기반시설, 중점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장비제조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안보가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통지 제1조 1항).

중국의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1) 외국인투자자가 중국내의 비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측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 및 운용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자산을 인수 및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이다(통지 제1조 2항).

외국인투자자의 사실상의 지배권 취득은 인수·합병의 결과 국내기업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국내기업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65) <http://www.mofcom.gov.cn/aarticle/b/c/201108/20110807713530.html>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인투자자 및 그의 모회사, 자회사가 인수·합병 후 소유하는 지분 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복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합병 후 소유하는 지분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소유 지분총액이 50% 미만이라도 그 지분에 의해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경영정책결정, 재무, 인사, 기술 등에 관한 실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통지 제1조 3항).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에 의한 인수·합병도 안전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며(통지 제5조 5항), 금융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은 포함되지 않는다.⁶⁶⁾ 금융 산업에서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⁶⁷⁾

2. 심사의 발동

외국인투자자가 안전심사 대상이 되는 중국의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무부의 안전심사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안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안전심사의 대상임에도 심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 상무주관부처는 인수·합병 거래 신청에 대한 처리를 일시정지하고 안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규정 제2조).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인수·합병 사안이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상무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15일 동안은

66)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이 강한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內地與香港 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를 각각 체결한 바 있고, 금융 분야에 대하여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보이고 있다.

67) 김관호, 앞의 논문, 55면.

인수·합병에 관한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안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도 국무원 산하의 각 정부부처와 전국 규모의 업별 협회, 해당 산업의 국내기업 또는 관련 업계에 있는 기업은 인수·합병 거래 사항에 대한 안전 심사 실시에 대한 건의를 상무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통지 제4조 2항). 상무부는 건의 받은 인수·합병 사안이 심사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설회의에 제출한다. 연설회의에서 안전심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무부는 해당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요구하게 된다(규정 제3조).

3. 심사기구 및 절차

안전심사의 심사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관하고, 인수·합병 사안에 관련된 업종 및 분야에 따라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연설회의에서 이루어진다(통지 제3조). 심사는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로 나뉜다. 일반심사는 관련 부처의 서면 의견수렴 과정으로 상무부가 연설회의에 심사를 회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연설회의는 5일 이내에 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하고, 관련 부처는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인수·합병이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면 심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5일 이내에 이를 상무부에 통지함으로서 심사를 종료한다. 관련 부처로부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 연설회의는 5일 이내에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연설회의에서 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이 일치된 경우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중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최종결정을 한다. 특별심사 과정은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통지 제4조 3항).

4. 심사기준

2007년에 제정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국자본의 중국 국내기업 매수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 사업자집중 심사 및 국가안전심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전의 의미 및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무원의 안전심사 통지 제2조는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다음 네 가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 인수·합병 거래가 국방에 필요한 국내제품의 생산능력, 국내 서비스의 제공 능력 및 관련 설비시설에 대한 영향 등 국방안전에 미치는 영향, 2) 일수합병 거래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 3) 인수·합병 거래가 사회 기본생활 질서에 미치는 영향, 4) 인수·합병 거래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의 연구개발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사회 공공질서 유지, 기술안보의 범위까지 심사 대상이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⁶⁸⁾

5. 심사결과의 집행

상무부는 연석회의로부터 서면 심사의견을 수취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과 지방 상무주관부문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인수·합병 거래 절차를 재개할 수 있고,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신청인은 인수·합병 거래 내용을 조정하고 신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안전에 이미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관련 부처와

68) 김관호, 앞의 논문, 57-58면.

제3장 중국의 외국기업 설립 규제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함께 해당 거래의 중지 및 관련 지분·자산의 양도, 또는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야 한다(규정 제7조).

연석회의에 심사가 청구되지 않았거나 연석회의에서 심사 결과 국가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도 추후에 인수·합병 거래 내용의 변경, 관련 합의서의 수정, 경영활동의 변경, 기타 사정의 변화 등으로 해당 거래가 안전심사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거래와 활동을 중단하고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규정 제10조).

[표 6] 외국투자자에 대한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의 비교⁶⁹⁾

구 분	중 국	한 국
국가안전 의 주요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안전에 미치는 영향 -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영향 - 사회 기초질서에 대한 영향 -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대한 영향 - 군사적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과 관련 - 국가기밀 계약 내용의 노출 가능성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영향
심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지방 상무주관부처의 신청여부 확인) - 상무부의 검토(15일) - 연석회의의 일반심사(30일) - 연석회의의 특별심사와 국무원의 최종 결정(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신고와 주무부처의 검토(30일)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90일)

69) 김관호, 앞의 논문, 67면의 표를 수정, 보완한 것임.

구 분	중 국	한 국
심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석회의: 국무원 지도하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위원회: 지식경제부 소관(지식경제부 장관 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장, 안전과 관련된 행정부처장 또는 시·도지사 참여)
위해성 제거·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중지, 지분양도 등 필요 조치 시행(상무부) - 심사과정에서 거래내용의 자발적 조정과 재심 청구 가능 - 심사통과 후에도 필요시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취득 불허, 강제매각 등 필요조치 발동(지식경제부) - 특정사업부문 분리매각 등 조건부 허가 결정 가능 - 외국인 투자 변경신고 시 주무부처의 재검토
기타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규모의 업별 협회, 국내의 관련 기업들도 심사 필요성에 대한 건의 가능 -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의 제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는 적용 제외 - 외국인투자신고 후 30일 이내 투자에 한해 심사 발동 가능

제 4 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

I. 중국 기업결합신고 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자 또는 기존 기업 인수방식에 의한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결합신고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적은 거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간이심사 절차에 따라서 간단한 서류 심사로 종결하거나, 향후에 반독점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적거나 원상회복이 용이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 국가안전심사제도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기업 인수 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석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안전심사의 통과 요건으로 기술이전 등과 같이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 시에 국가안전심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회사법 상의 문제나 반독점법 상의 문제 외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안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⁷⁰⁾

III. 법원과 행정부문간 관계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을 위하여 중외합자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면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자회사를 해산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지분을 매수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합자회사의 해산 또는 지분 매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법률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중재판정(특히, 중국 외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행정부문(상무부문과 공상행정부문)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중국 내 관련 부문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중외합자경영 계약이 실질적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70) 陈鹏联, 王桃清, ‘我国外商直接投资现存问题及解决路径’, 『西安航空技术高等专科学校学报』, 第29卷第6期, 2011.11, 52~55页.

제 4 장 중국의 직접투자 관련 조세 법제와 외환관리법제에 대한 분석

제 1 절 조세법제와 그 변화

중국은 근래 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내외국인 세제차별 제도를 철폐하고 첨단산업위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및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와 함께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 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여 중국에 직접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기업소득세 개정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조세제도 개혁안을 밝히고 있으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에 대한 세재개혁안을 실시하고 있다.⁷¹⁾

I .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1. 기업소득세법

2007년 3월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외자기업과 내자가업의 소득세를 통일한 바 있다. 「기업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일반적인 국내기업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⁷²⁾ 중국 역내에 기관을 설치하여 기관과 실

71) ‘중국, 영업세와 중치세(부가세) 통합 방침—기업 세(稅) 부담 감소 전망, 일부 서비스업 중복과세 논란’, 뉴스타운, 2012.02.26.

<http://www.new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67> (방문일자: 2012-06-13)

72) 국내기업(居民企业)이란 중국의 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설립되거나 실질

제4장 중국의 직접투자 관련 조세 법제와 외환관리법제에 대한 분석

질적인 연계성이 있는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동법 제3조). 다만,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의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동법 제28조), 비국내기업이 중국 본토내에 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나, 설치하였더라도 동 기관과 연계성이 없는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동법 제4조).

2.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도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과 「기업소득세임시조례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이 폐지되었다. 동 조례에서는 기업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들을 구체화하고, 기업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II. 부가가치세 임시조례와 그 실시세칙

1.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부가가치세 임시조례(增值税暂行条例)」는 2008년 11월 10일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이다.

적인 관리 실체가 중국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비국내기업(非居民企业)이란 중국 본토 외 지역의 법규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실체는 중국 역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 역내에 기관을 두었거나 그러한 기관이 없더라도 중국 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⁷³⁾의 적용대상은 재화를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된다.⁷⁴⁾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율제를 도입하여 기본세율은 17%로, 저세율대상에 대하여서는 13%로 정하고 있으나, 수출 재화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⁷⁵⁾

2.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제정에 따라 2008년 마련된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은 2011년 10월 28일에 개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동 세칙의 개정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을 받는 매출액 범위를 낮게는 2배, 높게는 6배 이상으로 조정하였다(동 세칙 37조).⁷⁶⁾ 개정된 부가가치세 최저 과세기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3) 1994년 부가가치세인 증치세(增值税) 도입 이후 증치세가 간접세 혹은 유통세의 핵심세목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소비세와 영업세는 보조적 지위로 하락하였다. 소비세는 1994년 「소비세 잠정조례」 공포 후 담배, 주류, 화장품, 피부·모발보호제, 고급 장신구·보석·옥, 폭죽, 휘발유, 디젤류, 타이어, 오토바이, 소형 자동차 등 11개 품목이 과세대상이다. 영업세는 1993년 「영업세 잠정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우편전신, 문화·체육, 오락·호텔 등 9개 업종이 부과 대상이다. 조세제도는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에 관하여 구조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74)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박승록 편저,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경제법 이해』, 한국경제연구원, 2009.12, 152면.

75) ‘상하이 이어 베이징도 ‘영업세 폐지’, 기업 세부담 준다’, 2012.05.29. <http://www.onbao.com/news.php?code=ec&m=&mode=view&num=34546&page=1&wr=> (방문일자: 2012-06-13)

76) 동 세칙의 개정과 함께 「영업세 임시조례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의 개정도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 매출액 범위를 상향조정하였다(제23조).

즉, 화물의 판매와 과세용역에 대하여서는 월 매출액을 5천위안 ~ 2만 위안으로 정하고, 횟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회(일) 매출액을 3백~5백 위안으로 정한다.

III. 영업세

영업세는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세목으로서 중국에서는 영업세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을 용역제공, 무형자산 및 부동산 매출로 하고 있다. 현행 영업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 수리수선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⁷⁷⁾

1. 영업세 임시조례

「영업세 임시조례(营业税暂行条例)」는 1993년 제정되어 2008년 11월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납세의무자와 과세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영업세의 과세범위는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전기·통신업, 문화·스포츠업, 오락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과세항목 범위 내의 용역과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된다.⁷⁸⁾

77) 그러나 이 두 가지 세금은 서비스업종에서는 중복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운수업의 경우 화물에는 중치세가 부과되고 노무에는 영업세가 부과되고 있어 중치세 납부자가 인력을 아웃소싱(Outsourcing)할 경우 영업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가 된다. 이와 반대로 영업세를 납부하는 측이 화물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중치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국, 영업세와 중치세(부가세) 통합 방침—기업 세(稅) 부담 감소 전망, 일부 서비스업 중복과세 논란’, 뉴스타운, 2012.02.26-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67> (방문일자: 2012-06-13))

78)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210~211면.

2. 영업세 임시조례 실시세칙

「영업세 임시조례 실시세칙(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은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0월 28일에 개정되어 2011년 11월 1일에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⁷⁹⁾

개정된 내용은 제23조 3항의 영업세 최저 과세기준의 범위이며, 기간별로 납세하는 경우에는 월 영업액을 5천 위안~2만 위안으로 정하고, 거래별로 납세하는 경우에는 거래(일)당 영업액을 3백~5백 위안으로 정한다.

IV.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영업세는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업세와 부가가치세의 중복과세 논란이 줄곧 제기돼 옴에 따라 재정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북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개혁안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세제개혁안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세정사 정지엔신(郑建新) 부사장은 2012년 5월 24일 부가가치세 통합 세제개혁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체계를 유지하되 기존의 영업세를 폐지하고 6%, 11%의 낮은 세율을 신설하며, R&D, 문화산업, 물류 등 일부 서비스업에는 6%, 교통운수업에는 11%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해, 북경을 비롯해 천진(天津), 중경(重庆), 하문(厦门), 심천(深圳), 강수(江苏), 하남(湖南), 해남(海南), 안휘(安徽), 복건(福建) 등 10개 지역에 부가가치세 통합 세제개혁안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⁸⁰⁾

79) http://tfs.mof.gov.cn/zhenewinx/caizhengbuling/201110/t20111031_603587.html

80) ‘상하이 이어 베이징도 ‘영업세 폐지’, 기업 세부담 준다’, 2012.05.29 (<http://www>.

제 2 절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I. 외환관리조례

중국에서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형태의 규정은 별도로 입법되어 있지 않으며, 국무원이 1996년 제정하여 1997년과 2008년에 두 차례 개정된 「외환관리조례(外汇管理条例)」를 기본으로 외환관리법제가 편성되어 있다.⁸¹⁾

II. 해외 위안화의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중국 상무부의 2011년 10월 12일 「해외 위안화의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有关问题的通知)」에서는 해외 투자자가 국제무역 또는 사전 투자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에 대하여 합법성을 부여하고, 다만 직접투자에 한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위 통지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위안화에 대하여는 중국 국내에 직접투자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위안화는 국제무역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해외로 송금된 위안화이윤 및 주식양도, 감자, 청산, 선투자회수를 통해 취득한 위안화, 해외에서 발행한 위안화채권, 위안화주식 및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한 위안화가 포함된다. 해외 위안화 직접투자금은 유가증권이나 금융 파생상품에 직접 혹은 간접 투자해서는 안 되며 위탁대출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외위안화직접투자의 심사관리절차는 기존의 외국인직

onbao.com/news.php?code=ec&m=&mode=view&num=34546&page=1&wr= (방문일자: 2012-06-13))

81) http://www.gov.cn/zwgk/2008-08/06/content_1066085.htm

접투자의 심사권한과 거의 일치하나, 3억 위안 이상의 투자 사업, 직접금융을 위한 담보·임대, 소액신용대출, 경매, 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창업투자 혹은 주식투자회사, 시멘트, 철강, 전해질알루미늄, 조선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하여서는 성급 상무 주관기관에서 상무부의 심사를 받은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업종에 직접투자 할 경우, 현행 외국인부동산투자 심사허가와 등기 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투자액이 3억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각 성급 상무 주관부처를 통해 상무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III.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의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外商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管理办法)」이 2011년 10월 13일 공고됨에 따라 해외투자자는 위안화 결제계좌를 통하여 직접투자하거나 위안화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에서는 외국기업, 경제조직 및 개인이 위안화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할 때, 중국의 외국인투자자 직접투자업무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자는 「위안화은행결제계좌관리방법(人民币银行结算账户管理办法)」과 2010년 10월 1일 시행된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境外机构人民币银行结算账户管理办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안화결제계좌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 중 투자 사업과 관계있는 위안화 전년도비용 자금과 이윤분배, 청산, 감자, 주식양도, 선투자 회수 등으로 취득한 위안화 재투자자금은 전용계좌이용원칙에 따라 위안화 전년도비용 자금과 재투자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동 계좌는 현금의 입출금 업무에 이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영

제 4 장 중국의 직접투자 관련 조세 법제와 외환관리법제에 대한 분석

업허가를 취득한 후 10 영업일 내에 관할 인민은행지점에 외국인투자 기업 허가증 사본, 영업허가증 부본, 조직기구등록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 위안화자본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동 기업의 중국 상무부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동 방법에서는 주로 외국인투자자들과 은행이 동 방법에 따라 결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무역을 통해 위안화를 취득한 외국인기업이 위안화를 중국 국내에 재투자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 점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기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대 중국 투자와 함께, 중국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V.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

2010년 9월의 중국인민은행의 「해외기업의 위안화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境外机构人民币银行结算账户管理办法)」에 따라 위안화결제계좌 신청이 가능해졌다.⁸²⁾

동 방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기업은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한 해외에 합법적으로 등기하여 설립한 기업이다(제3조).

위안화 은행결제계좌에 대하여서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관리, 감독하고,⁸³⁾ 각 은행은 해외기업의 위안화 계좌, 외환계좌 및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은행결제계좌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외기업의 위안화은행결산계좌의 계좌번호에는 앞에 일괄적으로 ‘NRA’를 더한다(제5조, 제6조).

82) http://www.pbc.gov.cn/publish/zhifujiesuansi/1067/2010/20100929154441253564114/20100929154441253564114_.html

83) 중국에서 은행 감독에 대한 권한은 중국인민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모두 가지고 있다.

V. 외환업무관리 강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은 2011년 3월, 「외환업무관리 강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加强外汇业务管理有关问题的通知)」를 통하여,⁸⁴⁾ 국경 간 자본이동에 따른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동 통지에서는 은행의 외환 결제 종합관리의 지위를 강화하고, 재수출무역에 의한 외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선불대금과 90일 이상의 이연금 비율을 낮춘 바 있다. 또한,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의 국내금융기관들의 단기 외채 지표를 감소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다.

VI.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의 외환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수출과 고정투자 위주에서 민간소비 등 내수 위주로의 경제모델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외환제도 개혁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는 물론 세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관리제도 개혁은 금융시장 육성과 개방 가속화의 중요한 과정이며, 특히 외환관리제도의 빠른 진행에 따라 향후 중국 중시의 국제화, 채권시장의 육성 및 개방의 진행, 금융산업의 개방과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핫머니 유입 우려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활성화 될 소지가 크며 이로 인해 위안화 국제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4) 「外汇局通知要求进一步加强外汇业务管理有关问题」, 中央政府门户网站, 2011年03月30日. http://www.gov.cn/gzdt/2011-03/30/content_1834974.htm (방문일자: 2012-06-13)

외환제도 개혁 이후 경제 성장 모델 전환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위력이 확대되고 있는 차이나 머니가 국내 채권·증권시장에 본격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원화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따라서 리스크도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거시적 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상황에 관련된 위험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중국의 저비용경쟁력에 의존한 수출업체들과 부동산 및 주식시장 노출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의 투기성 자금 유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구매력 증대 등을 기반으로 중국 자금의 국내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의 소비자신용 시장 성장 및 위안화 결제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대 중국 투자 기회 증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⁸⁵⁾

85) 한국금융연구원,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금융VIP시리즈』 2012-06, 2012.05.08, 20~23면; 동애영 외, ‘중국외환제도 개혁 및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13호, 하나금융그룹, 2010.10.30, 35~41면.

제 5 장 중국의 기업결합 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

제 1 절 반독점법과 관련 규정

반독점법(反壟斷法)은 2007년 8월 제정되어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반독점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합의,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4장 기업결합, 제5장 행정권력의 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와 제한, 제6장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독점법에서는 제2조에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인수·합병(M&A)를 통하여 중국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제4장의 기업결합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정책결정과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기관은 반독점위원회(反壟斷委员会),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다. 반독점위원회는 반독점정책결정과 행정기관 간의 업무조정이 주된 역할이며 실질적인 집행은 반독점위원회를 제외한 3개의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기업결합 사전심사와 조사에 대한 집행기관은 상무부가 된다.

중국 반독점법은 형식적으로는 57개 조에 불과하고 반독점법 제9조 1항에서 국무원에 반독점법 시행지침의 제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하여 국무원은 반독점법 시행이후에 기업결합 신고기준 이외의 시행세칙을 점진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특히 기업결합에 관한 규정이 많다. 아래에서는 반독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무원과 상무부가 발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조사 등과 관련된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무원은 2008년 8월 3일 「기업결합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이하, 신고기준규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반독점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결합의 기준에 대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의 「기업결합 신고방법(经营者集中申报办法)(이하, 신고방법이라 함)」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2조에서는 상무부를 집행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제3조 이하에서는 반독점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업결합의 형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방법(经营者集中审查办法)(이하, 심사방법이라 함)」도 위의 신고방법과 마찬가지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방법 제2조에 따르면 상무부가 그 집행기관이 된다. 동 방법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한 반독점심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 의견진술권이나 관계자 의견수렴절차, 그리고 공청회의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독점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기업결합의 허가 또는 금지의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심사방법 제14조).

제 2 절 기업결합 사전신고

I. 기업결합 사전신고 이전의 협의

심사방법 제8조에서는 기업결합을 신고하기 전에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상무부와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⁸⁶⁾ 이를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실시이전에 기업결합 신고의무 존재 여부,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상무부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무부의 심

86) 윤상윤,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법제—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고찰’, 워크숍 자료집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85~93면.

사과정 이전에 상무부와 당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신고이전에 지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⁷⁾

II. 기업결합 사전 신고

중국 반독점법 제21조에서는 기업결합이 국무원이 규정하는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업결합을 실행하기 이전에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기준의 설정에 관하여는 국무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이 정한 신고기준규정은 총 5개 조문의 행정법규로서 제정되었다.

국무원 신고기준규정 제2조는 반독점법 제20조를 반복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 그 표준을 정하고 있다. 동 제3조 1항에서는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결합을 ‘영업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즉,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 연도의 전 세계 영업액 합계가 인민폐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참여 사업자 중 최소한 둘 이상 사업자의 직전 회계년도 중국내 영업액이 모두 인민폐 4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직전 회계년도 중국내 영업액 합계가 인민폐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참여하는 사업자 중 최소한 2의 사업자의 직전회계년도 중국내 영업액이 모두 인민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액을 계산할 때에는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업종, 영역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수업종의 영업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제3조의 기준에

87) 사전신고 전 상담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2조 8항에서 규정한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는 없고 단순한 협의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바, 기업결합 사전신고 전 협의에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부합하지 않더라도 규정된 절차⁸⁸⁾에 따라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통해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반독점법과 국무원의 신고기준규정에서는 기업결합이 일정요건⁸⁹⁾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음을 정하였고 사후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전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고기준규정 제4조는 상무부가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직권조사의 요건을 추상적으로 정할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기업결합을 할 경우 규제요건인 경쟁제한가능성을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법규집행의 예견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둘째, 상무부의 직권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가능성이 커져 반독점법에서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결합만을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전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반독점법 제21조에서는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기업결합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기업결합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의 실시의 중지, 주식 또는 자산의 기간 내 처분,

88) 이 절차에 대해서 상무부는 입법초안 「신고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독점혐의가 있는 사업자집중 증거수집에 관한 임시방법(关于对未达申报标准涉嫌垄断的经营者集中证据收集的暂行办法)」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제정되지 않고 있다. 국무원 신고기준 제4조는 사전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따라서 이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려고 했던 이 초안의 제정을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주목 할 점은 「기업결합신고방법」에서는 초안에 규정되었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 결합의 신고와 조사규정」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4조에 의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상윤, 전계논문, 86면).

89) 반독점법 제정 이전에 발표된 초안에서는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신고기준을 정하였지만, 제정·공포된 법에서는 신고기준이 삭제되고 국무원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무원은 영업액 규모에 따른 신고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기간내 영업양도 및 기업결합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⁹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 그러나 제48조의 규정은 ‘동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실시하는 때’라고 하여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위반, 상무부 결정 이전 기업결합금지의무위반 등의 모든 기업결합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반독점법집행기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규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각 위반행위별로 그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무부는 「미신고 기업결합의 조사처리 임시방법(未依法申报的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이하, 미신고기업 처리방법)」을 발표하여 상무부가 고발, 언론매체정보, 관련부문의 의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득한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사전신고기준에 부합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실시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III. 신고기준으로서의 영업액

「신고방법」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국무원신고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영업액의 범위, 산출방법과 관련개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고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신고방법 제4조에 의하면 영업액은 관련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의 상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고 각종 세금 및 그 부가는 공제한다. 단, 기업소득세와 공제가 혼가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영업액이란 세법상 영업세⁹¹⁾

90) 중국 반독점법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과징금의 개념이 없으며,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모든 금전적 행정제재(罰款)는 우리나라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91) 영업세란 가공, 수리를 위한 노무 이외의 기타 노무와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 판매로 인한 영업액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의 과세대상인 영업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전체 매출액이다.

「신고방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단일 사업자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영업액의 범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단일 사업자의 영업액을 산출할 때는 단일 사업자, 단일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 통제(지배)하는 다른 사업자(자회사), 단일 사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 통제하는 기타 사업자(모회사),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 통제하는 다른 사업자, 전술한 사업자 중 2인 또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통제하는 다른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영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계열회사관계가 있는 기업 간의 거래는 영업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영업액 합계를 산정할 때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이에 공동 통제되는 다른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 통제되는 사업자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 중 공동 통제하는 사업자 또는 후자와 통제관계가 있는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⁹²⁾

반면 제7조에서는 ‘영업액의 계산세칙’이라는 표제 하에 결합대상회사의 일부분만이 기업 결합될 때에는 결합대상회사는 기업결합과 관련된 영업의 영업액만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 사이에 기업결합을 수차례 하는 방식으로 사전신고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년 내에 연속 실시된 수차례의 기업결합은 한 번의 기업결합으로 간주된다. 기업결합이 발생한 시점은 최후 거래부터 기산하고 영업액은 수차례 이루어진 영업을 병합하

92) 그러나 공동 통제되는 사업자와 제3자인 사업자 사이의 영업액은 포함하고, 이 영업액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공동통제 사업자가 평균액을 분담한다. 예를 들면, A와 B가 기업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A와 B 사이에 공동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업 C가 있고 C가 통제하는 D가 있다면, A와 C 또는 D, B와 C 또는 D 사이의 거래는 영업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C와 제3자(E) 사이에 발생한 영업액은 A와 B가 평균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을 하여도 결국 모든 기업결합 대상기업의 영업액에 포함된다.

여 계산한다. 통제관계가 있는 다른 사업자가 기업결합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즉, 동일한 기업 간에 행해진 첫 번째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마지막 기업결합에 대한 합의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고, 2년 이후에 체결된 기업결합 합의는 당해 기업결합이 사전신고 기준 미만인 때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IV. 사전신고 면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 1인이 다른 모든 사업자의 50/100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기업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 1인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의 50/100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전신고가 면제된다(반독점법 제22조).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중의 하나가 다른 회사의 모회사인 경우, 즉 기업집단 내의 기업결합⁹³⁾인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기업집단 내의 기업결합이기는 하지만 모회사는 기업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그 모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도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V. 사전신고 절차

1. 신고 및 자료의 제출과 신고의 철회

「신고방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업결합 신고서,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기업결합합의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직전 회계년도

93) 이때의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기업결합에 해당될 것이다.

재무회계보고서, 상무부가 정한 기타 문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⁹⁴⁾ 그리고 신고인은 기타 상무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상무부가 보충 문건, 자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보충 문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후술하는 두 가지 결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무부는 보충 문건, 자료의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입안’통지를 하게 되고 기초심사에 들어간다. 또한 입안통지일로부터 기초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법정기간을 계산한다.

상무부가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방법(经营者集中审查办法, 이하, 심사방법)」 제3조에서는 상무부가 심사결정을 하기 전에 신고인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 상무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가 철회에 동의한 때에는 심사절차는 종료된다.

94) 「신고방법」 제11조 ① 신고의 문건, 자료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1) 신고서. 신고서는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기업결합 예정일시. 신고인의 신분증명 또는 등기증명, 국외신고인은 반드시 해당지 공정기관의 공정문건과 관련인정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인이 서명한 수권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즉, 기업결합거래상황; 관련시장획정;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관련시장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에 대한 통제력; 주요 경쟁자 및 그 시장 점유율; 시장집중도; 시장진입; 업종발전현황; 기업결합이 시장경쟁구조, 업종발전, 기술진보, 국민경제발,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평가 및 논거; 지방정부와 주관부문의 의견 등 의 관련방면의 의견, 3) 기업결합 합의 및 관련문건.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 한다: 합의서, 계약서 및 그에 상응하는 보충문건 등의 각종 형식의 기업결합 합의 문건; 기업결합 거래의 시행성 연구보고, 기업실사업무보고, 업종발전업무보고, 기업결합계획보고 및 기업결합전후 발전예측보고 등의 기업결합 합의를 뒷받침하는 각종 보고, 4)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회계사무소를 통해 감사한 전회계년도 재무회계보고, 5) 상무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문건과 자료.
② 신고인이 전항에 규정된 문건,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부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공청회

기업결합에 관한 공청회에 관해서는 반독점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상무부는 후술하는 코카콜라와 훼이위엔(汇原)의 기업결합 심사결정문에서 공청회 실시에 관해 언급하였고, 「심사방법」 제7조에서는 공청회의 조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 상무부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무부는 공청회 개최를 서면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기업결합 해당 사업자, 경쟁자, 사업자의 구매 또는 판매기업 및 기타 관련 기업대표의 참가를 통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가, 사업자단체대표, 관련 정부부처의 대표 및 소비자대표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청회 참가당사자가 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단독진술을 원할 경우 상무부는 단독의견 청취를 협용할 수 있다. 공청회 실시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내용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의견의 청취 등 법위반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규정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0조와 큰 차이가 없다.

제 3 절 기업결합 심사절차와 심사기준

I. 기초심사 절차

상무부는 관련 문건,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초심사를 진행하고 본심사(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무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사업자는 기업결합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⁹⁵⁾ 상무부가 본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업결합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30일이란 기간이 자연일인지 아니면

95) 윤상윤,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법제—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고찰’, 워크숍 자료집 『중국 투자법제에 관한 현안 분석』, 93~101면.

행정기관업무일인지 여부이다. 법령에서는 규정이 없고 학설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연일로 본다.⁹⁶⁾ 다음 두 가지 사례의 결정과정을 통해 미루어보면 상무부도 자연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본심사를 할 것으로 결정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하는 동시에 본심사 과정에 들어간다.⁹⁷⁾

반독점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도 본심사 이후에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심사를 실시한 후에만 금지결정, 조건부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심사의 실시 여부에 대한 상무부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 행위이므로 피심사인이 상무부에 본심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

II. 실질심사 절차

실질심사(본심사)는 본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기업결합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심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문건, 자료가 부정확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신고 후에 관련 상황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무부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최대 6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6) 商务部条法司编, 앞의 책, 225면. [<http://www.cnantitrust.cn/193/z48470.aspx> 참조]

97) 주목할 점은 인베브의 AB회사 인수 사례에서 상무부는 본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제한성 조건을 부과하여 기업결합을 인가하였다는 점이다. 이행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회사는 AB회사가 현재 소유한 칭다오맥주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7% 이상으로 그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 ② 만약 인베브회사의 최대출자자(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주에 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당사회사는 즉시 상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회사는 인베브회사가 현재 소유한 주장(珠江)맥주유한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8.56% 이상으로 그 지분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사회사는 화윤설화(华润雪花)(중국)유한회사와 북경연징(北京燕京)맥주유한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

반면 「심사방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본심사 단계에서 2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상무부의 반대의견의 고지와 사업자의 항변의견 제출이다. 상무부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고지하고 고지와 함께 사업자가 서면의 항변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사실과 이유,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변의견 제출 기간을 도과하는 때에는 반대의견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상무부와 기업결합 당사자 사이의 조정(협의)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기업 스스로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 행위적 조건 또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조건을 제출하여 상무부와의 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기업결합 당사자와 상무부는 모두 기업결합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한성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기업결합 당사자가 그 제한조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업비밀정보라 여기는 바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시에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별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성 조건의 별본은 명확하여 제3자가 그 유효성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제3자란 상무부와 기업결합 당사자 이외의 이 제한성 조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타 행정기관, 전문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심사방법에서는 기업결합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제한성 조건을 자산 또는 영업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 네트워크 설비 또는 기초설비 등의 개방 또는 핵심기술 등의 사용허가와 같은 행위적 조건, 구조적 조건과 행태적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심사과정 중에는 제한성 조건을 수정할 수 있고 다른 제

한성 조건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한성 조건이 최종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때에는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상무부는 기업결합 금지결정, 단순인가결정, 조건부인가결정의 세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본심사 결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금지결정과 조건부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제는 인가결정을 할 때에는 상무부의 공고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무부가 반독점법 공포 이후 기업결합의 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업결합 당사자에게는 서면으로 인가처분을 통지하지만 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가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이 상무부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무부가 조건부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자가 제한요건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기업결합 사업자는 상무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한요건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한 요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상무부는 그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기간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런데 반독점법에는 제한요건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그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독점법 제48조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제한 요건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한요건 이행의무 위반에 대하여 반독점법 제48조를 적용한다면 그 위반만으로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과태료도 지나치게 높게 부과될 수 있다.

III. 심사기준

1. 관련시장 확정기준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시장의 확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⁹⁸⁾ 그로 인해 반독점법 시행 이후에 어떠한 기준으로 관련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지침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무부는 2009년 5월 24일에 「관련시장확정에 관한 지침(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이하, 지침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지침」은 총 4장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각국의 법이론을 수용하여 관련시장 확정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지침」 제1장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법적 근거, 관련시장 확정의 작용, 관련시장의 합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제3조에서는 관련시장은 ‘사업자가 일정시기에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범위 또는 지역범위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관련상품시장, 관련지역시장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관련시장 확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련시장을 확정할 때에는 대체성 분석, 즉 수요의 대체성과 공급의 대체성을 분석함으로써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시장 특히 관련상품시장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 대체성 분석을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 제3장에서는 관련시장 확정의 방법, 관련상품시장 확정 시 고려요소, 관련지역시장 확정 시 고려요소를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시장을 확정하는 방법은 각 사안별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징·용도·가격 등의 사실을 근거로 수요의 대체성 분석을 하고, 필요할 때

98) 이는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기업결합 규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에는 공급의 대체성 분석도 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범위가 명료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때는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SSNIP TEST)’의 분석방법에 따라 관련시장을 획정한다.⁹⁹⁾ 셋째, 어떠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 특징과 기본적 속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요컨대 수요의 대체성과 공급의 대체성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한 조건아래에서는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 분석을 통해 관련시장을 획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99) 「지침」 제10조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의 기본방법] ①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분석방법으로 현재 각국의 반독점법지침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분석방법에 의거해 산출한 관련수치를 통해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관련시장 획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 ②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가상적 독점가가 가격을 경쟁가격수준 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상품집합 또는 지역범위, 즉 관련시장을 확정하는 데 있다. ③ 가상적 독점가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한다. 먼저 반독점 심사대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목표상품에서 출발하여 이 지역의 사업자를 이윤 최대화가 경영목표인 독점가로 가정한다. 이 때 고찰해야 할 문제는 다른 상품의 판매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적 독점가가 비일시적이고(1년 이상) 소폭의(예를 들어, 5~10%) 상품가격인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목표상품의 가격상승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대체성이 있는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가상적 독점가의 판매량이 감소한다. 만약 상품가격의 상승 후에 가상적 독점가의 판매량의 감소가 이익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면 가상적 독점가는 이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이고 관련시장은 목표지역의 목표상품이다. ④ 만약 가격상승이 다른 상품에 의한 목표상품의 대체를 유발하여, 가상적 독점가의 가격인상행위가 실행할 수 없는 비이의적인 행위인 때에는 대체상품을 관련시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어서 확대된 상품집합을 기점으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 상품집합의 가격상승 후 가상적 독점가가 실행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만약 답이 긍정이라면 새로운 상품집합이 관련상품시장을 구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의 분석과정을 계속한다. ⑤ 상품집합이 커질수록 집합 내 상품과 집합 외 상품의 대체성은 갈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일정한 상품시장이 형성되고, 이 상품시장 내 가상적 독점가는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이로부터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한다. ⑥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한 후에는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관련상품시장의 획정과 유사하게, 관련시장은 먼저 반독점 심사대상인 목표지역시장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역의 판매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상적 독점가가 이 지역시장내의 관련상품의 소폭 가격인상을 통해 실행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고, 만약 답이 긍정이라면 곧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한다. 만약 다른 지역시장의 대체성이 가상적 독점가가 가격인상을 실행할 만한 이익을 없게 만든다면 지역시장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고, 가격인상을 실행할 만한 이익이 최종까지 도달하면 곧 관련지역시장이 획정된다.

동 「지침」에서는 관련상품시장 확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첫째, 상품의 총체적인 특징과 용도, 둘째, 상품의 가격차이, 셋째, 상품의 판매경로, 넷째, 기타 중요요소(수요자 기호 또는 상품에 대한 의존 정도, 브랜드 충성도, 수요자가 대체품으로 전환할 경우의 장애와 위험 및 비용, 가격차별시장의 존재여부 등의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생산과정과 생산방법, 공급의 대체가능성, 공급의 대체에 필요한 시간, 공급의 대체 시 추가발생 비용과 위험, 공급의 대체 후 공급되는 상품의 시장경쟁력·판매경로 등을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정하고 있다.

관련지역시장의 확정 시에는 수요측면에서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첫째, 상품의 운수비용·운수특징, 둘째, 다수의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실제 지역과 주요상품의 판매분포, 셋째, 지역 간의 무역장벽(관세, 지방성 법규 등을 포함), 넷째, 기타 중요요소(특정 지역 수요자의 기호, 이 지역에서의 상품의 운송량 등)가 그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관련상품을 다른 지역으로 공급 또는 판매할 때의 즉시성과 실행가능성(거래요청을 다른 지역 사업자에게 전환할 때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요소로 규정하였다.

2.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감소)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기준과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는지 여부에 따른 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의 판단기준이고, 후자는 독일의 판단기준이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제한하거나 또는 배제·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하

여야 한다고 하여(제28조) 전자의 판단기준에 따른 입법을 하였다.¹⁰⁰⁾

반독점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1) 기업결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관련시장 시장점유율 및 시장통제력, 2) 관련시장의 집중도, 3) 기업결합이 시장진입·기술진보에 미치는 영향, 4) 기업결합이 소비자와 다른 관련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5) 기업결합이 국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제1호와 제2호는 수평결합에 대한 심사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시장의 집중도를 분석할 때 CR_k 또는 HHI지수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¹⁰¹⁾ 다만 상무부가 2011년 8월 29일 제정한 「기업결합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임시규정」 제6조에서는 관련시장에서 사업자의 집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HI지수와 CR_k지수를 이용하여 형량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상무부는 Henkel Hongkong과 텐더화학(天德化工控股有限公司)의 합영기업 설립¹⁰²⁾, 화이자회사의 와이어스회사 인수 사례에서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면서 HHI지수를 활용하였다.

제3호의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에서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진입(신규진입)의

100) 曹康泰 主编,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解读』, 中国法制出版社, 2007, 144면.

101) CR_k지수와 HHI(허핀달-허쉬만)지수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써 CR_k는 상위 k개 대기업의 점유율을 합산하여 시장집중도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HHI지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후 그 합으로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1992년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기업결합지침에서 CR4 분석방법에서 HHI지수 분석방법으로 전환을 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에서는 CR1과 CR3로 시장의 집중상황을 평가하였으나 2007년 12월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종래의 CR_k를 대체한 HHI지수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시장집중도를 평가하고 있다(윤상윤, 앞의 논문, 98면).

102) <http://www.mofcom.gov.cn/aarticle/b/g/201204/20120408087135.html>

용이성을 판단할 때에는 시장진입의 적시성·가능성·충분성에 따라 세부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¹⁰³⁾ 제5호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할 때에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적 요구에 따른 규정이다. 따라서 기업결합이 국내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 등 국민산업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금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규정은 후술하는 기업결합의 예외적 인정 사유가 아닌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 제6호는 포괄규정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고려 요소 이외에도 상무부가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을 때에는 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우 추상적이어서 법 집행에 대한 명확성·예견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3. 기업결합 금지에 대한 예외

반독점법에서 기업결합의 금지에 대한 예외인정 사유는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적극적 영향이 소극적 영향(경쟁제한 효과) 보다 현저히 큰 경우와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 예외인정 사유의 존재는 당해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전자의 사유의 구체적 예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에 대한 예외인정 사유와 같은 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파산에 임박한 기업의 회생 등을 그 예로 드는 견해가 있다.¹⁰⁴⁾ 또한 당해 기업결합이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공공이익’은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입법기술상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공이익의 확정을 위한 원칙

103) 王晓晔 主编,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8, 181면.

104) 王晓晔 主编, 위의 책, 185~186면.

을 정할 필요가 있고, 반독점법 집행의 불확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결합이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기구와 법원은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¹⁰⁵⁾

제 4 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 상무부의 기업결합 규제제도는 현재 반독점법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비교하여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집행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법 규와 상무부의 부문규장들은 반독점법 시행이후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정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또한 2008년 이래로 금지결정 또는 조건부 승인 결정 공고문의 경쟁제한성 분석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관련시장 획정방법, 경쟁제한성 분석방법과 그 증명에 있어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집행초기에 있어서 기업결합 심사의 예측가능성 부재, 절차적 겹함 등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 이외에서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집행당국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방식을 통하여 중국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집행당국과의 법리적 논쟁보다는 협의를 통한 기업결합 승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기업결합사전협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 중의 협의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심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행당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점이나, 조건 협의과정에서도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105) Fang Xianmin, "An Introduction to merger control under China's Anti-Monopoly Law", *Some Enforcement Issues of Chinese Antimonopoly Law*, 한국경쟁법학회-서울대경쟁법센터, 2009.04.27 발표자료, p. 53.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결합의 절차 또는 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요건을 받아들이면서 기업결합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큰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을 통한 투자 이익이 기업결합 비용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방식을 통한 투자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코카콜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기업의 중국 기업인수에 대한 여론이나 정부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기업이나 유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는 경우, 그 행정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사법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사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의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중국의 국내적 경제 상황과 현안이 되는 사안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의 12.5 계획 기간 동안에는 중국의 경제, 환경, 노동, 기업, 외환, 조세 법제가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과거에 비해 외자기업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변해 가고 있는 반면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위주의 사업보다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과 법제에 대하여 그 주요 특징과 최근 변화 동향, 그리고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이나 향후 외국투자법제의 방향성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중국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경제 정세와 국내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과 관련 법제를 제·개정하여 온 바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의 투자 관련 법제와 외국인투자 정책의 현안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러한 정책과 법제의 빠른 변화가 우리나라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하여서도 제시하여 보았다.

과거와 달리 외자기업에게만 부여되었던 우대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 국내기업에 비해 단순 제조업에서는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 수립을 통하여 그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합자

혹은 합작 또는 독자기업 형태로 할 것인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또는 조합기업의 방식을 취하여 진출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중국 국내 회사법규와 증권법규, 조세법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소득세의 우대혜택을 누리는 첨단기업이나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해당 업종에 우대혜택의 전제조건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우대혜택의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리스크와 기업 이윤 발생 시의 이익회수 문제, 기업 철수 시의 법적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장려업종에 대한 여러 우대조치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과 외환관리정책에 대한 법적 지식이 전제되어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 산업지도목록이나 서부지역 우대목록 등에서 어떤 유형의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업종으로의 기술적 전환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 FTA 협상 시에 투자 분야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한국금융연구원,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금융VIP시리즈』

2012-06, 2012.05.08.

김관호, 「중국의 「인수 · 합병형 외국인 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고찰」, 『통상법률』, 법무부, 2012.04.

김선영, 「전인대 개막일 쏟아진 올 해 목표들」, 『China Spot』, 신영증권, 2012.03.05

정환우, 「중국 新<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의 내용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2.03.

성한경, 「한 · 중 FTA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분야 검토-서비스분야」, 한 · 중 FTA 공청회 자료집, 외교통상부 · 무역협회, 2012.02.24.

진정미, 「G2시대 중국의 Post-외국인투자 「정책과 법규」 변화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02

이시욱, 「한 · 중 FTA 서비스부문의 주요 쟁점」, 2012 한 · 중 FTA 토론회 자료집, KIEP, 2012.01.31.

송원근 · 최남석, 「한 · 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 · 중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12.01.26.

조성식, 「중국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M&A 관련 법률 규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1.12

참 고 문 헌

- 김종대 외, ‘한국 물류 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7권 제4호, 한국무역협회, 2011.12
- 장은정,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11
- 노수연,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규획의 종합평가’,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11-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5. 2.
- 양효령, ‘중국 역내(境內)기업 인수·합병(M&A)에 있어서 법 적용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03
- 최창범, ‘한국물류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 『물류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물류학회, 2011.03
- 김병구, ‘중국 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CHINA 연구』 제10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02
- 동애영 외, ‘중국외환제도 개혁 및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13호, 하나금융그룹, 2010.10.30.
- 최명해 외, ‘중국 ‘12.5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314호, 2010.10.26.
- 유호림,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0.09
- KIEP 북경사무소,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0년 03월호, 2010.03
- 송 표, ‘외국인 투자법제의 최근 동향 : 후위기시대하의 중국 외자 정책의 방향’, 『경성법학』,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치훈, ‘최근 한중 FTA 환경변화 및 금융협력 가능성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10.

박승록 편저,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2009.12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김동훈 외,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8

이민자,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중국식 발전모델’, 『신아세아』 16권 2호

여지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9-1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05

김도현, 『중국 반독점법』, 법문사, 2009.06

최정식, ‘외국인투자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중국법연구』 제10집, 한중법학회, 2009

<국외문헌>

林立国, ‘追问康菲漏油事件:外商直接投资加剧环境污染’, 『今日关注』, 2011年 09月

曹 滔, ‘我国外贸企业开展内销的制约因素与策略’, 『中国外贸』第244期, 2011年 7月

马鸿盛, 刘勇, ‘中国服务业FDI与服务贸易关系的实证分析’, 『经营管理者』, 2011年 第21期

张广荣, ‘怎样认识外资并购中的“国家安全审查”’, 『世界知识』, 2011年 06期

참 고 문 헌

- 袁东升, 王春超, 李颖, ‘我国中小企业利用外资的现状与对策’, 『广西社会科学』, 2009年 第3期
- 陈鹏联, 王桃清, ‘我国外商直接投资现存问题及解决路径’, 『西安航空技术高等专科学校学报』, 第29卷 第6期
- 王 飒, ‘我国利用外国直接投资存在的几点问题及对策’, 『商业经济』, 第2007年 第4期
- 许 云, ‘我国汇率波动影响外商直接投资的实证研究’, 『财会通讯·综合』, 2011年 第6期
- 帕丽达, 买买提, ‘外商直接投资与新疆产业发展’, 『中国商贸』, 2011年9月
- 杨志伟, ‘外商直接投资对中国制造业出口结构的影响’, 『产业观察』, 2011年, 第10卷 第10期
- 史飞飞, 外商直接投资对我国制造业结构升级的影响, 『流通经济』, 2011年 第2期(总第613期)
- 权威, 代雷, ‘外商直接投资对我国经济发展的影响’, 『China's Foreign Trade』, 2011年 12期
- 周明月, ‘外商直接投资对环境规制的影响研究’, 『无锡商业职业技术学院学报』, 第11卷 第5期, 2011年 10月
- 王金宝, ‘外商直接投资对北京市经济增长的贡献研究’, 『人口与经济』, 2011年
- 露 丹, ‘外商投资企业推行工会化的法律与实践’ 『淮海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社会经纬』, 第9卷 第16期, 2011年 8月
- 相 宇, ‘外商投资房地产行业新政的法律解读’, 『经济与法制』, 2011年 2月

- 孙 刚, ‘进一步利用外商直接投资的对策和建议’, 『经济参考研究』, 2009年 第12期 总第2212期
- 左 琳, ‘江西省利用外商直接投资的风险防范’, 『区域经济』, 2011年第16期
- 邹学慧, ‘基于FDI 的本土经济发展研究’, 『哈尔滨商业大学学报(自然科 学版)』, 第2卷 第3期, 2011年6月
- 邹忠全, ‘广西引进FDI的现状、问题及对策分析’, 『经济研究导刊』, 2011年 第6期
- 孙彦风, ‘关于我国FDI分布不平衡问题的研究’, 『现代经济信息』, 2011年 20期
- 张昀, 李胜兰, ‘法律制度对外商直接投资影响的研究’, 『南方经济』, 2011年 第7期
- 程思婧, 闫登丰, ‘FDI与中国碳排放关系的实证研究’, 『经营管理者』, 2011年 01期
- 肖志坚, 郭友群, ‘FDI与广东省产业集群互动关系研究’, 『China’s Foreign Trade』, 2011年 12期
- 钱梦欣, ‘FDI和自主创新对我国出口贸易的非均衡影响’, 『现代商业』, 2011年 27期
- 师一木, ‘FDI对我国出口贸易的影响分析’, 『价值工程』, 2011年 23期
- 肖霆, 刘小红, ‘FDI对湖南产业结构的影响’, 『商场现代化』, 总第650期, 2011年 6月